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호주 -

김광수



지역법제 연구 15-16-④-6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호 주-

김 광 수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호 주-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Opening of Information

-Australia-

연구자 : 김광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 Kwang-Soo

2015. 10.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배 경

- 이 연구는 각국의 정보공개 법제를 연구하고 국내에 소개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은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류가 증대하고 있다.
- 호주는 영연방에 속했던 나라로 영국법의 전통을 강하게 받아왔지만, 최근 미국과의 법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호주는 1982년 연방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정부의 투명성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 목 적

- 이 글은 1982년 호주 연방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연구하고, 우리 법제와 비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호주의 비교법적으로 상호이해증진의 폭을 넓히고, 우리 법해석에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

- 아울러 향후 호주의 정보공개 법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주제어 : 호주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 대상, 정보 공개 의무기관, 청구상당, 행정심판소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islations regarding the access to and freedom of information around the world and to introduce them to South Korea.
- Located in the Pacific Rim as South Korea is, Australia has seen an increasing number of exchanges with South Korea.
- As part of the Commonwealth of Nations, Australia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the traditions of the British law. Recently however, Australia has had exchanges with the US in the area of law and has striven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sake of welfare of its people.
- In 1982,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came into force into force in Australia, determined to enhance governmental transparency by providing a right of access to government documents of the Federal Court.

Objective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 Act) of 1982 enforced in Australia and compares it with the South Korean legislation.
- By this comparative study, the paper wishes to broaden the horizon of mutual understanding and to contribute to the better interpretation of the South Korean legislation.
- This paper also seeks to assist with all other future studies on the FOI Act and relevant legislations of Australia.

II. Contents

Introduction to the Australian Legal System

- Legal Tradition
-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and Control System in Australia

- Overview and Basic Structure: the Information Control Legal Systems

Details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 Overview and Details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Implications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in Australia

III. Expectation

Legal Effects

- The study will help understand the FOI Act and relevant legislations in Australia and improve the interpretation of the South Korean legislation.

Extralegal Effects

- The study intends to further advance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s with Australia and t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conflict of law issues involving the people.

➤ **Key Words** :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formation Commission, Target Information, Institutions and Agencies Required to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Consultation on the Reques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14
제 2 장 정보공개 관리체계	15
1. 개 요	15
2.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5
3. 범 위	16
4. 용어의 정의	17
5.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문서의 정의	19
6. 정보공개 심사청구인	22
7.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23
8. 법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	26
9. 행정심판소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	28
10. 비서실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	28
11. 연방계약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	29
12. 특정한 및 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 되는 정보 ...	29
13. 법의 적용 제외의 예외사유인 정보	31

제 3 장 정보공개법제의 주요내용	33
제 1 절 호주의 법제도	33
1. 법적 전통	33
2. 헌법과 법률	33
제 2 절 호주의 정보공개법	34
1. 개 요	34
2. 정보공개 계획	34
3.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	36
4. 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36
5. 정보공개 방법	36
6. 정보공개 계획의 관리	38
7. 정보공개청구권	39
8.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정보공개 방법	41
9.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	42
10. 정보공개 거부 의제	45
11.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46
12. 청구의 이송	47
13. 컴퓨터의 활용	48
14. 정보공개 형식	49
15. 정보공개 유예	50
16. 일부공개	51
17. 정보공개 청구의 거부	52
18. 청구상담 절차 (request consultation process)	54
19. 문서의 부존재로 인한 공개거부	55
20. 정보공개 거부이유의 제시	56

21. 정보공개에 관한 상담	56
22. 영업에 관계된 문서의 정보공개 범위	57
23. 사생활에 관계된 문서의 정보공개 범위	59
24. 정보공개 비용	60
25. 비공개 대상 문서	63
26. 조건부 비공개 대상 문서	71
27. 개인기록의 수정 및 주석	76
28.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내부심의	83
29. 정보위원회에 의한 심의	86
30. 정보 수집 권한	101
31. 제 소	105
32. 행정심판소의 심의	107
33. 조사 및 이의신청	115
34. 옴부즈만에 대한 이의신청	124
35. 권리를 남용하는 정보공개 청구	125
제 4 장 호주의 정보공개법제의 시사점	129
제 1 절 호주 정보공개법제의 특징	129
제 2 절 호주와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비교	129
제 3 절 우리 정보공개법제에 주는 시사점	137
제 5 장 결 론	139
참 고 문 헌	141
<부 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14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현대 행정의 특징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다. 정보공개는 정부와 개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또한 민주적인 정부를 만드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오늘날 전자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국민 개개인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권리 구제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호주는 1982년 연방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을 제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정부의 투명성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호주는 영연방에서 출발한 국가로 법제도의 근간은 영국의 제도에 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법제도를 활발히 참조함으로써 세계 보편적인 법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교류와 경제관계에서 보듯이 호주 법제도의 정확한 이해는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호주의 정보공개법제를 정리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얻음으로서 우리 정보공개법제의 발전에 도움을 얻고, 아울러 한국과 호주의 법문화 교류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호주의 연방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하여 정보공개의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행정정보 공개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정보공개법의 주요 쟁점으로는 공개대상 정보, 공개방법과 절차,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종류, 공개 거부된 경우 구제절차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호주의 1982년 제정된 연방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하여 정보공개법의 기본적 내용을 살펴본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공개현황, 정보공개관리체계 및 정보공개법제의 현황 등이 포함된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정보공개 법제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 후에 우리나라 법제와 비교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 글은 다음에 설명하는 1982년 호주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을 중심으로 하여 호주의 정보공개제도의 전반적인 모습을 소개한다. 호주의 정보공개법은 조문의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상세한 내용을 고찰하는 것만으로 우리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운용에 관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국내에 호주의 정보공개 법제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하여 향후 호주 정보공개법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 2 장 정보공개 관리체계

1. 개 요

호주는 1982년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버전은 2015년 1월 2일자 업데이트이다. 호주 정보공개법의 정식 명칭은 「구성원들에 대하여 연방 정부와 그 기관들의 공적인 문서에 대한 공적인 접근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An Act to give to members of the public rights of access to official documents of the Governments of the Commonwealth and of its agencies)」이다. 약칭으로는 1982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라고 부른다.

2.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 약 칭

이 법률은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1982」로 인용될 수 있다.

(2) 효력의 발생

이 법률의 몇몇 부분은 ‘선언’(proclamation)에 의해서 정해진 날짜에 따라 효력을 발한다.

(3) 전반적인 목표

- 1) 이 법률의 목적은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에 연방정부 혹은 노포크 아일랜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 (a) 기관들에 대하여 정보를 공표할 의무를 부과함
 - (b) 문서들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공함
- 2) 의회는 이러한 목표들을 통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의 민주주의를 발달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 (a)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증진시킬 목적으로 정부절차에 관한 공공 참여를 증가시킴
 - (b) 정부의 활동에 대한 정밀한 검토, 논의, 그리고 의견개진을 증가시킴
- 3) 의회는 또한, 이러한 목표들을 통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관리되며, 국가적인 자원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 4) 의회는 또한, 이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과 권한은, 정보에 대한 공공 접근권한을 가능하게 하고 증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낮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작용하고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3. 범 위

- 1) 이 부분은 장관이나 기관의 직원이 이 법률과 상관없이 정보나 문서를 공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권한을 수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 법률에 의하여, 위와 같은 권한을 제한하거나 그러한 권한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저해하고자 할 의도가 없다.

- (a) 정보나 문서에 관하여 공표할 권한이 있지만, 이 법률에 의하면 제한되는 경우
- (b) 정보나 문서에 관하여 접근권한을 수여할 권한이 있는 경우

4. 용어의 정의

- 1) 이 법률에서, 다른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이상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접근 허가 결정(access grant decision)은 법 53B section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다.
 - 접근 거부 결정(access refusal decision)은 법 53A section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다.
 - 제정법(ACT enactment)은 1988년 Australian Capital Territory(Self-Government) 법률의 3 section에서 규정된 입법을 의미한다.
 - 청원이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 취해지는 경우, 이는 1976년 Ombudsman 법률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 관련 제3자(affected third party)는 법 53C section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다.
 - 기관(agency)은 부서, 규정된 기관 혹은 노포크 아일랜드의 기관을 의미한다.
 - 청구인(applicant)은 청구한 사람을 의미한다.
 - ‘오스트레일리아’가 지리적 맥락에서 언급된 경우, 노포크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 오스트레일리아 지리정보기구(organisation)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산하 기관을 의미한다.
 - 오스트레일리아 정보국은 국방부 산하기관을 의미한다.

- 권한있는 자(authorised person)는 법 77 section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다.

2) 내각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내각의 위원회

(b) 이하의 조직

(i) 노포크 아일랜드의 장관들로 구성된 조직

(ii) 내각에 대응하는 조직

- 내각 기록(cabinet notebook)이란, 내각회의에서 있었던 논의 또는 심의에 관한 내용이 담긴 회의록 또는 유사한 기록으로, 그러한 논의나 심의에 국무장관(Secretary to the Cabinet)이 참가하거나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관한 내용일 것을 요한다.

- 국가 건강보험 장(Chief Executive Medicare)은 1973년 보건서비스 (Human Service. Medicare) 법률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다.

3) 청문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는 다음을 의미한다.

(a) 1908년 Quarantine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청문위원회

(b) 2006년 Offshore Petroleum and Greenhouse Gas Storage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청문위원회

4) 연방계약은 다음의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a) 연방, 노포크 아일랜드 혹은 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

(b) 계약의 내용상, (i)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리고 (ii)기관을 위하여 혹은 대신하여, 그리고 (iii) 연방, 노포크 아일랜드 혹은 기관이 아닌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c) 노무가 기관의 기능 혹은 권한 사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

- 청원인(complaint)은 법 70(1) subsection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다.

-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Contracted service provider)는 연방 계약상 다음을 의미한다.

- (i) 연방계약의 당사자
 - (ii) 연방계약 내용에 따라 노무의 책임이 있는 자
- 5) 안보 정보 문서는 문단 7(2C)(a)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다.
- 안보 정보국은 안보국의 일부로서 안보정보국이라고 알려진 기관을 의미한다.
 - 각부(department)란 오스트레일리아 공공 서비스의 부서로서 연방 정부의 부서에 대응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5.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문서의 정의

- 1) 이 법에서의 문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다음 중 어느 하나이거나 혹은 어느 한 부분
 - (i) 기록 되어있는 종이나 다른 매체
 - (ii) 지도, 계획, 도화 혹은 사진
 - (iii) 해석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의미가 있는 기호나 형상, 상징이나 투철들이 기록된 종이나 다른 매체
 - (iv) 다른 물건이나 도구의 보조에 따라, 혹은 보조 없이 음향, 이미지 혹은 표기가 재생산 될 수 있는 물건 또는 도구
 - (v) 기계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정보가 저장되거나 기록된 물건
 - (vi) 정보의 기록
 - (b) 위에 해당하는 것을 복제, 재생산 혹은 복사한 것
 - (c) 그러한 복제, 재생산, 복사한 것의 일부
- 2)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이 법이 정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a) 참고의 목적으로 유지되는 공개된 자료
 - (b) 내각 기록(Cabinet Notebook)
- 3) 기관 문서

- (a) 문서가 기관의 소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에서 작성된 경우 및 기관에 제출된 경우
 - (b) 법 section 6C에 따르기 위해 기관이 해당 문서를 수령했음을 계약상 조취를 취한 경우
- 4) 이 법에서의 입법이란 법 section 4A에 따라 다음을 의미한다.
- (a) 법령
 - (b) 중앙 자치체(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조례
 - (c) 법률 또는 그에 준하는 조례에 따라 작성된 법률문서(규칙, 규제 혹은 내규) 및 다른 입법에 의해 수정되는 입법
- 5) 적용 제외되는 콘텐츠 서비스 문서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콘텐츠를 포함하거나 콘텐츠의 기록(1992년 방송 서비스 법 스케줄 7이 의미하는 바에 따른)을 포함한 문서 중
 - (i) (위 스케줄의 의미에 따라) 콘텐츠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거나 그를 이용하여 접근한 것
 - (ii) 그러한 콘텐츠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거나 그를 이용하여 접근할 당시 유해한 콘텐츠-서비스 콘텐츠였을 것
 - (b) 유해한 콘텐츠-서비스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방법을 알려주거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문서(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주소, IP 주소, URL이나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경우)
- 6) 적용이 제외되는 문서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이 법 Part IV(제외문서)(section 31B 참조)의 목적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문서
 - (b) 법 section 7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기관, 인물에 관한 문서
 - (c) 기관 또는 정부 부서의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관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

- 7) 적용이 제외되는 인터넷 콘텐츠 문서는 다음과 같다.
- (a)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로서(1992년 방송 서비스 법 스케줄 5이 의미하는 바에 따른)
 - (i) 인터넷에서 복사된 것
 - (ii)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할 당시 유해한 인터넷-콘텐츠
 - (b) 유해한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접근방법을 알려주거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문서(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주소, IP 주소, URL이나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경우)
- 8) 공무원이란 기관에 관하여, 기관의 일원 혹은 기관의 상급 직원의 일원을 포함한다.
- 장관에 관한 공식 문서는 장관 소유하에 있는 문서, 혹은 그의 장관 지위에 의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당해 기관 혹은 정부 부서의 직무와 관련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 기관장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해당 부서의 최고 책임자(secretary of the Department)
 - (b) 규정된 기관과의 관계에서
 - (i) 규칙이 당해 사무처가 최고위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 (ii) 당해 기관이 부(Department)에 해당하지 않고 위(i)항이 적용되지 않는 독립규제기관(Agency)에 해당하는 경우(1999년 Public Service 법률상 의미에 따라) - 그 기관의 수장
 - (iii) 위 (i), (ii)항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기관의 일상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자
 - (iv) 기관의 구성원이 한 사람에 그치고 위 (i)항 내지 (iii)항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그 자
 - (v) 기관의 구성원이 두 사람 이상이며 위 (i)항 내지 (iv)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당해 기관의 회의를 주재하는 자

6. 정보공개 심사청구인

- 1) 심사청구 당사자들이란 법 section 55A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다.
- 정보공개 결정에 관하여 심의나 항소를 요청할 권리는 다음의 경우만료된다.
 - (a) 결정에 관하여 내부심의 혹은 정보공개위원회(정보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모두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 (b) 결정에 관하여 내부심의를 신청한 경우
 - (i) 내부 평가가 종료되었으며
 - (ii) 내부심의의 결정에 관하여 위원회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 (c) 결정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를 청구한 경우에
 - (i) 위원회 심의에 관한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또한
 - (ii) 심판소에 그 결정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경우
 - (iii) 위원회심사와 관련하여 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거나(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채), 혹은 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 (d) 결정에 관하여 심판소에 심사를 청구한 경우
 - (i) 심사절차가 종료되었으며
 - (ii) 심판소의 심사에 관하여 연방법원에 항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때
- 위의 심판소는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를 의미한다.

7.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 1)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연방, 주 또는 자치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 권한있는 기관(유권기관) 이외에도
- 2) 규정된 행정기관을 보조하거나 그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입법에 의하여, 혹은 그 입법목적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 사단(위원회, 협의회, 하부-협의회 혹은 다른 단체)은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된 유권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유권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3) 다음과 같은 자는 위에 규정된 유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a) 다음과 같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 (i) 중앙자치체(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입법회의의 구성원인 사무실인 경우
 - (ii) 북부자치체(Northern Territory)의 입법 의회 구성원, 행정인 (administrator) 혹은 장관의 사무실인 경우
 - (iii) 노포크 아일랜드의 입법 의회 구성원, 혹은 그 지역의 행정인 또는 부 행정인(deputy administrator), 혹은 노포크 아일랜드의 장관의 사무실
 - (b) 다음과 같은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그 직책 혹은 의무를 수행하는 자
 - (i) 위의 규정된 사무실
 - (ii) 부(department)의 사무관 혹은 규정된 유권기관의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자
 - (iii)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무실
 - (iv) 유권기관을 목적으로 한 입법에 의해 설치된 사무실

- 4) 노포크 아일랜드의 유권기관을 보조하거나 그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법인 사단이 위원회, 협의회로 구성되는 경우
 - (a) 그러한 비법인 사단은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노포크 아일랜드 유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b) 그러나 당해 비법인 사단은 당해 유권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5) 다음과 같은 자는 노포크 아일랜드의 유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a) 다음과 같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 (i) 노포크 아일랜드의 입법 의회를 구성원인 사무실인 경우
 - (ii) 노포크 아일랜드의 행정관 사무실
 - (iii) 노포크 아일랜드의 부 행정관(deputy administrator)의 사무실
 - (iv) 노포크 아일랜드 장관 사무실
 - (b) 다음과 같은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그 직책 혹은 의무를 수행하는 자
 - (i) 위의 규정된 사무실
 - (ii) 노포크 아일랜드 유권기관의 사무관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무실
 - (iii) 노포크 아일랜드 유권기관의 구성원인 사무실
 - (iv) 노포크 아일랜드 유권기관을 목적으로 한 입법에 의해 설치된 사무실

- 6) 이 법에서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는 다음을 포함한다.
 - (i)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Australian Defence Force)
 - (ii) 오스트레일리아 육군(Australian Army Cadets)
 - (iii) 오스트레일리아 해군(Australian Navy Cadets)
 - (iv) 오스트레일리아 공군(Australian Air Force Cadets)

- 7) “연방정부의 안보” 라는 표현은 일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위 표현은 다음과 같이 확장될 수 있다.
- (a) 오스트레일리아 국내 혹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외에서, 연방정부 혹은 그에 협조하거나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에 대하여 체제 전복적이거나 그 이익을 해치는 활동의 탐지, 방지, 혹은 억제와 관련된 사안
 - (b) 다음을 위해 사용되는 연방정부 혹은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통신 시스템 혹은 암호 시스템의 안보
 - (i) 연방정부 혹은 그에 협조하거나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의 방위
 - (ii) 연방정부의 국제 관계 수행
- 8)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 (a) 당해 기관의 기능을 다른 기관이 취득하는 경우 - 폐지된 기관에 대한 청구나 그 청구에 대해서 폐지된 기관이 내린 결정은 그 기관의 기능을 취득한 기관에 대한 것이거나 그에 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b) 당해 기관의 기능을 하나 이상의 다른 기관이 취득하는 경우 - 폐지된 기관에 대한 청구나 그 청구에 대해서 폐지된 기관이 내린 결정은 청구의 목적이 된 문서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 기능을 취득한 기관에 대한 것이거나 그에 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c) 기관의 문서가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의 관리 밑으로 이관된 경우(1983년 국가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의미 내에서) - 그 기관에 대한 청구나 그 청구에 대해서 폐지된 기관이 내린 결정은 청구의 목적이 된 문서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 기능을 가진 기관에 대한 것이거나 그에 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9) 만일 청구의 대상이거나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되는 기관이 실제 그 청구나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당시 존재

하지 않았던 경우, 이 법에 따라 그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에 관한 처리를 위해서만, 그 기관은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 10) 이 법 paragraph 33(b)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송수신된 정보나 사안은 상호 기밀 보안에 관한 조약이나 공식 제도에 따라 연방 정부 혹은 연방 유권기관과 다음과 같은 상대와 송수신한 정보나 사안을 포함한다.
- (a) 외국 정부 혹은 외국 유권기관
 - (b) 국제기구

8. 법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

- 1)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 (a) 법원(노포크 아일랜드의 법원은 제외)은 규정된 유권기관으로 간주한다.
 - (b) 법원을 설립하는 입법에 의하여 그의 책임에 따라 설립된 사법 사무실(노포크 아일랜드의 사법 사무실은 제외) 또는 법원과 관련된 사무실(노포크 아일랜드의 법원은 제외)을 관리하는 자는 규정된 유권기관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며, 부(Department)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c) 등기소 또는 법원의 다른 사무실(노포크 아일랜드의 법원은 제외), 그리고 그 사무실의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법원의 일부로 간주한다.
- 2) 그러나 이 법률은 법원의 문서가 행정적인 성질의 사안에 관련되지 않는 한 그 문서에 대한 접근권 신청에 적용되지 않는다.
- 3) 불만신고제도(complaint handling)에 관한 서류 - 연방법원 판사들 가운데 적용제외 대상

- (a) 1976년 호주 연방법원법(Federal Court of Australia) paragraph 15(1AA)(1c) 및 subsection 15(1AAA)의 권한을 사용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자
- (b)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자.

위와 같은 목적에서 ‘불만 신고를 처리하는 자’(complaint handler)는 위 법률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다.

- 4) 불만신고제도(complaint handling)에 관한 서류 - 가정법원 판사들 가운데 적용제외 대상
 - (a) 1975년 가족법(Family Law) paragraph 21B(1A)(c) 및 subsection 21B(1B)의 권한을 사용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자
 - (b)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자
- 5) 불만신고제도(complaint handling)에 관한 서류 -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판사들 가운데 적용제외 대상
 - (a) 1999년 오스트리아 연방 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법 paragraph 12(3)(c) 및 subsection 12(3AA)의 권한을 사용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자
 - (b)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자
- 6) 노포크 아일랜드의 법원
 - (a) 노포크 아일랜드의 법원은 노포크 아일랜드 유권기관으로 간주된다
 - (b) 노포크 아일랜드 법원의 사법 사무실 또는 법원과 관련된 사무실(노포크 아일랜드의 법원은 제외)을 관리하는 자는 노포크 아일랜드 유권기관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며 노포크 아일랜드 유권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9. 행정심판소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

- 1) 행정적인 사안에 관련하여 특정 행정심판소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a) 각 행정심판소 Schedule 1에서 명시된 유권기관 혹은 단체는 규정된 유권기관으로 간주한다.
 - (b) Schedule 1에서 명시된 행정심판소 유권기관 혹은 단체에 관련된 사무실의 관리자, 행정심판소 유권기관, 단체를 설치하는 법률에서 그 자의 사무실 관리자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관리자는 규정된 유권기관이나 부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c) Schedule 1에서 명시된 트리뷰널, 유권기관 혹은 단체의 책임이 있는 등기소 혹은 다른 사무실이 규정된 유권기관으로 명시된 경우, 그러한 등기소나 다른 사무실의 직원들은 그러한 트리뷰널, 유권기관, 단체의 부분으로 간주한다
- 2) 그러나 이 법률은 그 문서가 행정적인 사안에 관련되지 않는 이상 심판소, 유권기관 혹은 단체의 문서에 관한 접근권 신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비서실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

- 1) 이 법률은 그 문서가 행정적인 성질의 사안에 관련된 것이 아닌 이상 비서실(Official Secretary to the Governor-General)의 문서에 대한 접근권의 신청에 적용되지 않는다.
- 2) 이 법률을 위하여, 1974년 Governor-General 법률 section 13에 의거하여 고용된 사람의 소유에 있는 문서는 그 소유가 위 법률에

의한 것인 이상 비서실(Official Secretary to the Governor-General)의 소유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1. 연방계약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

- 1) 이 법은 독립기관(agency)의 기능이나 권한행사에 관련된 연방정부 계약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그 기관에 적용된다.
- 2) 독립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문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a) 당해 문서가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하여 만들어졌거나 그 소유에 있는 경우
 - (i) 연방정부 계약을 위한 서비스 공급계약자
 - (ii) 연방정부 계약에 따른 하수급인
 - (b) 연방정부계약의 성과에 관한 문서(계약 합의에 관한 것이 아닌)
 - (c) 기관이 문서에 관한 접근권의 신청을 받은 경우

12. 특정한 및 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정보

- 1) 법 Schedule 2의 Part I 의 Division 1에서 명시된 단체들, 그리고 위 Division에서 명시된 사무실을 관리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률을 위하여 규정된 권한 있는 기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A) 기관(agency)의 정의를 위하여, Part I의 Division 2에서 명시된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의 일부분은 국방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법 Schedule 2의 Part II에서 명시된 인물들, 단체들, 그리고 부서들은 그들과 관련된 위 Schedule에 명시된 문서에 관하여 이 법률의 적용이 면제된다.

- 3) 각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에 관하여 이 법률의 적용이 면제된다.
 - (a) 다음과 같은 정보기관에서 작성되었거나 수취한 문서
 - (i) 오스트레일리아 기밀정보부 (Australian Secret Intelligence Service)
 - (ii) 오스트레일리아 안보 정보기구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
 - (iii) 정보 및 안보 감독청 (Inspector-General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 (iv) 국가평가원 (the Office of National Assessment)
 - (v) 오스트레일리아 국토정보기구 (Australian Geospatial Intelligence Organisation)
 - (vi) 방위정보기구 (the Defence Intelligence Organisation)
 - (vii) 오스트레일리아 신호국 (the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 (b) 정보기관의 문서에 관한 요약, 축약 혹은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 4) 장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에 관련하여 이 법률의 적용이 면제된다.
 - (a) 정보기관의 문서
 - (b) 정보기관의 문서에 관한 요약, 축약 혹은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 5) 각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에 관련하여 이 법률의 적용이 면제된다.
 - (a) 다음과 관련하여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에서 작성되었거나 수취한 문서(정보기관의 문서)
 - (i) 작전수행에 관한 정보(operational intelligence)의 수집, 보고 혹은 분석

- (ii) 외국 정부가 기술에 관하여 제한된 접근권을 부여한 경우
그에 따른 특별 접근 프로그램
- (b) 방위 정보 문서에 관한 요약, 축약 혹은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 6) 장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에 관련하여 이 법률의 적용이 면제된다.
 - (a) 방위 정보 문서
 - (b) 방위 정보 문서에 관한 요약, 축약 혹은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 7) 장관과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에 관련하여 이 법률의 적용이 면제된다.
 - (a) 왕립 아동 성적 학대 위원회(1902년 Royal Commission 법률의 Part 4의 의미에 따른)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수취한 문서
 - (i) 사적 세션에서 얻게 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 (ii) 사적 세션에 관련되거나 사적 세션에 참가한 자연인을 특정하는 것
 - (b) 사적 세션의 정보에 관하여 요약, 축약을 담고 있는 문서

13. 법의 적용 제외의 예외사유인 정보

- 1) 법 Schedule 2의 Part II의 subsection(2AA)에서, 상업활동(NBN Co)에 관련하여 사용될 시에는 제외)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기관이 정부나 정부의 유권기관이 아닌 개인과 경제적인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수행된 활동
 - (b) 기관이 정부나 정부의 유권기관이 아닌 개인과 상업적인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수행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활동

제 3 장 정보공개법제의 주요내용

제 1 절 호주의 법제도

1. 법적 전통

호주는 1780년대 영국의 이민자들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그 때문에 호주의 법체계는 영국법의 계수와 그 발전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780년대부터 총독부 산하에 법원이 설치되었는데 영국 최고법원의 하위 법원으로 기능하였다. 호주의 법질서는 기본적으로는 영국 보통법(common law)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성문헌법, 연방제도, 가정법원 그리고 행정심판소 등의 존재는 영국의 전통과는 다른 독자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겠다.¹⁾ 특히 오늘날에는 영국법과 차별성을 보이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법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점진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역시 크게 보아 영국법 전통 아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헌법과 법률

호주의 통치기구상 형식적으로는 영국여왕이 국가원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방총독이 권한을 행사한다. 헌법은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연방제의 채택은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²⁾

호주에서 사법의 최고권한은 연방대법원이 행사한다. 행정사건에 관해서는 1975년에 행정법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연방행정법원이 관장

1) 김정후, 호주(오스트레일리아)법의 전통과 체계, 강원법학 제20권, 200면 이하 참조.
2) 주호주대사관 인터넷문서, 호주의 정치구조의 특징과 현황 참조.

한다.3) 각 주와 준 주의 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사법권을 행사한다. 각 주에는 대법원과 중급법원(District Court) 그리고 지방법원(Local Court)이 설치되어 있다. 통상법원 이외에 위에서 든 행정법원(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기업법원(Industrial Bodies) 그리고 원주민 법원(The National Native Title Tribunal) 등이 있다.4)

제 2 절 호주의 정보공개법

1. 개 요

호주 정보공개법제의 현황과 운용절차 그리고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쟁송의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2. 정보공개 계획

- 1) 각 기관은 다음의 내용이 담긴 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 (a) 기관이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 (b) 기관이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 (c) 기관이 어떻게 이 Part를 준수할 것인지
-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 (a) 위 subsection(1) 에 따라 마련된 계획
 - (b) 당해 기관의 조직에 관한 구조적 설명(조직도)
 - (c) 대중(혹은 특정한 혹은 특정지위에 있는 자들)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권한 및 다른 권한을 포함한 그 기관의 기능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설명한 것

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사법제도개혁 관련 선진 사법제도 실태 파악을 위한 호주·뉴질랜드 출장 결과 보고, 2006, 50면 참조.

4) 위의 보고서, 48면 - 50면 참조.

- (d) 다음 인사에 관한 내용
 - (i) 법률에 따른 기관 책임자의 임명
 - (ii) 노포크 아일랜드 법률에 따른 기관 책임자의 임명
 - (e) 의회 또는 노포크 입법 의회에 제출되는 기관이 마련한 연간 보고서 상의 정보
 - (f) 기관의 책임이 있는 특정 정책 제안에 대한 대중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의 내용
 - (g) 기관이 법 Part III에 따른 청구에 대응하여 정기적으로 접근권을 부여하는 문서상의 정보(단, 다음 종류의 정보는 제외한다.)
 - (i)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개인정보
 - (ii)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개인의 사업, 상업, 재정정보
 - (iii) 정보위원(information commissioner)이 아래 subsection (3)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정보
 - (h) 의회나 노포크 아일랜드 입법회의의 청구나 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공된 기관의 정보
 - (i) 기관의 정보 혹은 문서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그 접근권에 관하여 연락할 수 있는 사무관의 연락처
 - (j) 기관의 업무 정보(operational information)(section 8A 참조)
- 3) 정보위원(Information Commissioner)은 법률 문서에 의하여, 위 subparagraph(2)(g)(iii)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4) 기관은 기관이 취득한 다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

- 1) 기관의 업무정보란 기관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능이나 권한을 수행하는데 필요하여 기관이 취득한 정보를 의미한다.
- 2) 기관의 업무정보는 기관이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
 - 기관은 이 법률이 요구하거나 허락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최신의 것이며 정확하고 완전한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1) 기관은 이 Part에 의한 면제문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공개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는 경우
- 2) 만일 법률이 특정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 기관은 이 Part에 의해서는 그 법률에 의해서 허가되지 않는 이상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5. 정보공개방법

- 1) 기관은 이 section에 따라 의무가 있거나 허가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2) 정보공개 대상자
 - (a) 일반 대중
 - (b)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나 법인격이 있는 단체

- 3) 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a)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b)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다른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공개함
 - (c)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관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함
- 4) 정보공개비용
 - 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만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개인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 (a)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직접 정보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
 - (b) 개인에게 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데 소요되는 실제적인 비용에 충당하는 범위에서만 부과
 - 만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얻는데 비용이 필요한 경우, 기관은 이 section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비용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5) 정보위원의 조력
 - 정보 위원(Information Commissioner)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a) 이 Part에 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거나 허가되는 정보의 확정 및 준비
 - (b) section 8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거나 허가되는 정보의 공개 방법 및 대상의 판단

6. 정보공개 계획의 관리

1) 정보공개 계획의 평가

- 정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이 법률과 2010년 Information Commissioner 법률에 따라, 위 법률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a) 기관과 협조하여, 이 Part에 의하여 마련된 기관의 정보 공개 계획의 수행평가

(b) 기관의 Part VIIB의 Division 2 준수 여부 조사(정보위원 조사)

(c) 계획의 수행에 관한 기타 모니터링, 조사, 보고

2) 기관의 정보공개 계획 관리방법

- 기관은 정보 위원과 협조하여 이 Part에 의하여 마련된 기관의 정보 공개 계획의 기관 내 수행에 관하여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a) 적절한 주기 평가

(b) 최소한 이 section에 따른 최근 평가로부터 5년 이내에

- 위 subsection(1)에 따른 첫 번째 평가는 이 section이 효력을 발생 하는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 이 Part 아래서 기능을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때, 기관은 다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a) 이 법률의 목표(section 3 및 3A에서 제시된 사항 포함)

(b) section 93A에 따라 정보 위원이 이 paragraph를 위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7. 정보공개청구권

1) 정보에 대한 접근권

- 모든 개인은 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a) 비공개 대상이 아닌 기관의 문서

(b) 비공개 대상이 아닌 장관의 공식문서

-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권은 다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a) 개인이 접근권을 청구하는 이유

(b) 기관이나 장관이 생각하는 그 개인이 접근권을 청구하는 이유

2)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 정보공개의 요건

(a) 개인이 subsection 15(2)에 따라 기관이나 장관에 다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한 경우

(i) 기관의 문서

(ii) 장관의 공식문서

(b) 규제에 따라 청구권이 부여되기 전 납부되어야 하는 비용이 납부되었을 것

3) 비공개와 부분공개

- 당해 문서가 정보공개 제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할 의무가 없다.

- 당해 문서가 조건부 면제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그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여 당시 공공이익에 반하게 되는 것이 아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위 subsection(5)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장관은 당해 문서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접근권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 (a) 당해 문서가 조건부 면제문서에 해당할 것
 - (b) 다음에 따른 면제문서인 경우
 - (i) Part IV(면제)의 Divsion 2에 따르는 경우
 - (ii) subsection4(1)의 면제문서의 정의에 관한 paragraph (b) 혹은 (c)의 의미에 따라
- 4) 공공이익에 따른 비공개
 - 정보공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
 - (a) 이 법의 목표를 진작시키는 경우(section 3 및 3A에 나열된 요소 포함)
 - (b) 공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논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
 - (c) 공공 지출에 대한 감시에 도움이 되는 경우
 - (d)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정보공개와 연관성이 없는 요인들
 - (a) 문서에 대한 접근권의 부여가 연방정부가 수치스러워 할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여부, 혹은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
 - (aa) 문서에 대한 접근권의 부여가 노포크 아일랜드 정부가 수치스러워 할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여부, 혹은 노포크 아일랜드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
 - (b) 문서에 대한 접근권의 부여가 타인으로 하여금 당해 문서를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여부
 - (c) 문서에 대한 접근권의 청구 대상이 된 기관의 최상급자가 당해 문서의 작성자인 경우

(d) 문서에 대한 접근권의 부여가 공공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관이나 장관은 정보위원이 section 93A에 따라 제시한 가이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개인의 이익에 대한 영향으로 인한 비공개 대상정보

- 다음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된다.

(a) 공개하기에 부적절한 개인정보

(b) 공개하기에 부적절한 개인의 사업, 상업, 재정, 혹은 직업활동에 관한 정보

(c) subsection(2)에 따라 정보위원이 공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정보

(d) 위 paragraph(a) 내지(c)에 따라 공개하기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외하고서는 공개하기 용이하지 않은 같은 문서상의 기타 정보

8.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정보공개 방법

1) 기관 혹은 장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a)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다.

(b)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주소의 링크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c)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설명한다.

2) 공개비용의 징수

(a) 그 개인이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지 않음

(b) 개인에게 접근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함

- 3) 만일 접근권을 부여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면, 기관이나 장관은 이 절에 따라서 정보가 공개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용에 대한 정보 또한 공개하여야 한다.
- 4) 정보공개 기한
 - 기관이나 장관은 개인에게 접근권이 부여된 날부터 업무일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업무일에는 다음의 요일을 제외한다.
 - (a) 토요일
 - (b) 일요일
 - (c) 이 section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휴일
- 5) 청구에 응하여 다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 (a) 1983년 Archives 법률에 따라 공개 기간에 있는 문서나 그 문서의 사본(죽은 자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제외)
 - (b)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공에 공개된 공공 기록의 일부로서의 문서
 - (ba) 주나 자치체의 법률에 의하여 공공에 공개된 토지 등기부의 일부로서의 문서
 - (c) 다른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문서

9.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

- 1) 개인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2) 정보공개 청구는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a) 문서로서 청구
 - (aa) 이 법률의 목적에 따른 청구임을 명시

- (b) 기관이나 장관이 특정하기 용이하도록 문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
- (c) 청구인에 대한 통지를 수취할 수단을 명시하여야 한다(전자우편 주소 등)

3) 청구방법

- (a) 기관의 사무직원, 혹은 장관의 보좌관에게 현재 전화번호부 등에서 명시된 중앙 혹은 지역 사무실로 신청
- (b) 위 paragraph(a)에서 언급된 주소로 선불 우편신청
- (c) 기관이나 장관이 명시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 발송

4)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조력

- 기관은 그 개인으로 하여금 이 section을 준수하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할 의무가 있다.
- (a) 기관에 대하여 청구를 하기를 원하는 때
- (b) 이 section을 준수하지 않는 청구를 하였을 때

5) 청구방법의 안내

- 개인이 다른 기관이나 장관에게 청구해야 할 것을 잘못된 기관에 발송한 경우 이를 수취한 기관은 그 청구를 적절한 기관이나 장관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도록 보조할 의무가 있다.

6) 청구에 대응하여야 하는 기간

- (a) 늦어도 청구가 기관이나 장관에게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청구가 도달하였음을 알리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b) 늦어도 그러나 청구가 기관이나 장관에게 도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에 관한 결정 결과(section 21에 따라 비공개 결정 포함)를 알리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의 존중

- 청구에 관한 결정을 내릴 시, 기관이나 장관은 정보위원이 section 93A를 위해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존중하여야 한다.

8) 처리기간의 연장

- 기관이나 장관이 section 26A, 26AA, 27 혹은 27A의 요건에 따라 위 paragraph (5)(b)에서 언급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문서로서 결정하는 경우.

(a) 기간은 30일이 연장되며 또한

(b)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인에게 그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가능한 빨리 통지하여야 한다.

- 외국 법인격과 상의하기 위한 처리기간의 연장

(a) 다음을 상대로 상의하는 경우.

(i) 외국 정부

(ii) 외국 정부의 유권기관

(iii) 국제기구 또한

(b) 청구의 대상이 된 문서가 subparagraph 33(a)(iii) 혹은 paragraph 33(b)에 따라 면제문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9) 이 subsection이 적용되는 경우.

(a) 위 paragraph (5)(b)에서 언급된 기간은 30일 연장되며 또한

(b)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인에게 그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가능한 빨리 통지하여야 한다.

-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의 경우 paragraph 15(5)(b)에서 언급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간, 혹은 subsection 15(6) 혹은(8)(상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을 다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a) 청구인이 문서로 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으며, 또한

(b) 기관이나 장관이 합의가 성립된 후 가능한 빨리 정보위원회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

- 복잡하거나 많은 양의 청구로 인한 기간 연장

(a) 기관이나 장관은 정보위원회에 대하여 paragraph 15(5)(b)에 언급된 기간이 당해 청구의 복잡성이나 방대한 양 때문에 그 청구를 처리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b) 정보위원회가 위 기관이나 장관의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위원회는 문서로써 위 기간을 30일 혹은 정보위원회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정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최대한 빨리 통지하여야 한다.

(i) 청구인

(ii) 기관이나 장관

10. 정보공개 거부 의제

1) 간 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 거부로 간주

(a) 기관이나 장관에 대하여 청구가 있었음

(b) subsection (2)에서 다루는 기간(당초 결정 기간 - the initial decision period)이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만료함

(c) 결정에 관한 통지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않음

2)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3) 간주거부

(a) 기관의 수석 사무관 혹은 장관은 당초 결정기간의 마지막 날 정보공개에 관하여 거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

- (b) 청구인에 대한 결정 통지는 section 26에 따라 같은 날 발송된 것으로 간주
- 4) 관련 기관이나 장관은 문서로서 정보위원회에 대하여 청구를 처리할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
- 5) 정보위원회는 그가 판단하기에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를 처리하기에 합당한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6) 정보위원회가 추가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그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7) subsection(3)(간주거부)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a) 기관이나 장관이 부여된 추가기간 내에 결정을 내린 경우
 - (b) subsection(6)에 따라 부여된 추가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 8) 그러나, subsection(3)(간주거부)는 다음의 경우 당초 결정기간이 연장된 것과 같이 적용된다.
 - (a) 기관이나 장관이 추가된 기간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음
 - (b) subsection(6)에 따라 부여된 추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1.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1) 인사기록이란 기관의 피고용자 혹은 전직 피고용자와 관련하여 인사기록(personnel records)은 기관의 인사 관리 목적을 위해 보관된 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 2) 인사기록 청구의 요건
 - (a) 기관의 피고용자가 그의 인사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취득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마련한 절차(이 법에서 제공하는 절차와 다른 것)가 있을 것

- (b) 피고용자 혹은 피고용자였던 자가 그의 인사기록에 대한 접근 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할 것

3) 예외

- (c) 그 개인이 위 paragraph(a)에서 언급된 절차를 밟은 경우
- (d) 다음의 경우
 - (i) 위 절차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 (ii) 위 절차에 따라 청구한지 30일이 지났음에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12. 청구의 이송

- 1) 적법한 청구가 있을 때 다음에 해당하면 청구를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청구를 해당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 (a) 당해 문서가 해당 기관의 소유가 아니나, 다른 기관이 당해 문서를 소유하고 있음을 청구를 받은 기관이 알고 있을 경우
 - (b) 문서의 주요 내용이 청구를 받은 기관보다 다른 기관의 기능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
- 2)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기관이 청구를 받은 경우
 - (a) Schedule 2의 Part I에서 명시된 단체나 개인이 작성하거나 수취한 문서
 - (b) 위 문서가 위 청구를 받은 기관보다 위 단체나 개인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 3) 이송의 대상이 되는 기관
 - (a) 위 단체나 개인이 설립되거나 위촉된 근거가 되는 법률을 집행하는 장관이 관리하는 부서(Department of State)에 대응하는 부서

- (b) 위 문서가 Schedule 2의 Part I의 Division2의 명시된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ce)에 의해 작성되거나 수취된 경우 - 당해 부서

4) 이송의 통지

- 이 section에 따라 다른 기관에 대하여 청구가 이전된 경우, 청구를 이전하는 기관은 이를 청구한 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이 청구를 처리하기에 필요한 경우 이를 문서로써 다른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송의 효과

- (a) 이전의 대상이 된 기관에 대한 청구로 봄
- (b) 청구를 이전한 기관에 당초 도달한 시점에 이전받은 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봄

13. 컴퓨터의 활용

1) 요건

- (a) 기관에 대하여 subsection 15(2)에 따른 청구(실무상 거부사유가 있는 청구 포함)가 이뤄진 경우
- (b) 청구의 내용으로부터 청구인이 접근하고자 정보가 기관의 출력되는 문서의 형식으로는 제공되지 않는 것임이 드러나는 경우
- (c) 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담고 있는 출력된 문서를 별개의 형식으로 생산할 수 있다.
 - (i) 기관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거나 검색하는데 사용하는 컴퓨터나 다른 장비를 사용하여 한다.
 - (ii)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음성 기록의 녹취록

- 기관은 당해 청구를 출력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같이 다뤄야 할 것이며, 이 법률은 마치 그 기관이 그러한 문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2) 기관은 위 subsection(1)의 준수가 기관의 자원을 현저하게, 또한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14. 정보공개의 형식

- 1) 문서에 대한 접근권은 다음 형식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 (a) 문서를 조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제공
 - (b) 기관이나 장관의 문서 사본의 제공
 - (c) 음성이나 영상이 재생될 수 있는 매체인 경우, 그러한 음성이나 영상을 듣거나 볼 수 있는 기회제공
 - (d) 문서의 내용이 음성으로 재생될 수 있거나 속기 혹은 암호화된 형태로 기록된 경우, 기관이나 장관이 해당 문서의 내용을 녹취록 등의 문서로 제공
- 2) 법 subsection(3) 및 section22를 조건으로, 청구인이 특정 형식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 그러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3) 만일 청구인이 요청한 형식의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에는 청구된 형식의 접근권은 거부되고 다른 형식의 접근권이 부여될 수 있다.
 - (a) 기관의 업무 또는 장관의 업무의 수행에 불합리한 방해를 가져오는 경우
 - (b) 문서의 보존에 해롭거나 문서의 물리적 성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c) 기관이나 부서(Department of State)의 업무에 관련된 것이 아닌, 문서에 포함된 사안의 저작권 침해(연방정부, 기관, 노포크 아일랜드가 소유한 저작권 제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 4) 법 subsection 17(1)을 조건으로, 개인이 문서에 대하여 특정 형식의 접근권을 청구하였으며 subsection(3)에 명시된 이유로 그 형식의 정보공개가 거절되고 다른 형식의 접근권이 부여된 경우, 청구인은 당초 청구했던 형식의 접근권이 부여되었을 경우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15. 정보공개유예

- 1) 청구를 받은 기관이나 장관은 문서에 대한 접근권의 부여를 다음과 같이 유예할 수 있다.
 - (a) 법률에 따라 문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경우 - 그 문서를 공개할 수 있는 기간까지
 - (b) 문서가 의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필요하거나 혹은 특정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한 공개에 필요한 경우 혹은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합당한 기간 만료시까지
 - (c) 해당 문서의 성급한 공개가 공공 이익에 반할 경우 - 문서의 공개가 공공이익에 반하지 않게 되는 사건 발생 후 혹은 충분한 기간 만료 후까지
 - (d) 장관이 당해 문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며 공개되기 전 의회가 그 문서의 내용을 공개 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회 회기 5일 경과 후까지
 - (e) 다음의 경우
 - (i) 노포크 아일랜드 기관이나 유권기관이 청구를 받았으며

- (ii) 노포크 아일랜드 장관이 당해 문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며 공개되기 전 노포트 의회가 그 문서의 내용을 공개 전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포크 의회 회기 5일 경과 후까지
- 2)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이 subsection (1)에 따라 유예된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인에게 유예된 사유 및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유예된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16. 일부공개

1) 일부공개요청의 요건

- (a) 기관이나 장관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
 - (i) 비공개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절하는 경우
 - (ii) 문서에 대하여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청구와 관계 없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경우
- (b) 기관이나 장관이 삭제통제 수정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i) section 11A 따라 수정본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의 의무가 있는 경우
 - (ii) 수정된 사본이 청구와 무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 (c) 다음을 고려할 때 기관이나 장관이 수정된 사본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때
 - (i) 수정의 성질 및 정도
 - (ii) 문서를 수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d) 청구인이 수정된 사본에 대한 접근권을 거부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청구 및 청구인과의 상의에 비추어)

2) 기관이나 장관의 일부공개 의무

- (a) 위 paragraph (1)(b)에서 언급된 수정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 (b) 청구인에게 수정된 사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일부공개시의 통지내용

- (a) 수정된 사본이라는 사실
- (b) 삭제의 근거
- (c) 삭제된 사안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이유

4) section 26(비공개사유)는 기관이나 장관이 문서 전체에 대하여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청구인이 기관이나 장관으로 하여금 문서로써 위 section에 따른 통지를 해줄 것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17. 정보공개 청구의 거부

1) 기관이나 장관이 문서에 관한 청구를 다루는 과정에서 실무상 거부사유(section 24AA참고)가 존재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 절차를 거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 (a) 청구상담 절차(request consultation process)(section 24AB 참고)를 거쳐야 한다.
- (b) 청구상담 절차 후 실무상 거부사유가 존속하는 경우 - 기관이나 장관은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2) 이 section의 목적을 위하여,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2 이상의 청구를 하나의 청구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a) 동일한 문서나 문서들에 대한 청구들인 경우
- (b) 문서들에 대한 청구로서 주된 사안이 동일한 경우

3) 실무상 거부사유

- 실무상 거부사유는 다음 둘 중 하나(혹은 둘 다) 적용되는 경우 존재한다.

- (a) 청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 (i) 기관의 경우 - 기관의 자원을 현저히 그리고 불합리하게 낭비하게 되는 경우
 - (ii) 장관의 경우 - 장관의 업무수행을 현저하고 불합리하게 방해하게 되는 경우
 - (b) 청구가 법 paragraph 15(2)(b)(문서의 특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이 법 subsection(3)을 조건으로, 그러나 기관이나 장관이 관여하는 사안을 제한함이 없이, 실무상 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관 혹은 장관은 다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원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a) 기관 혹은 장관 사무실의 수집 시스템 내에서 문서를 특정, 위치를 추적하고 수집하는 것
 - (b)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거절, 혹은 유예하거나 수정된 사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이는 다음을 위한 자원을 포함한다.
 - (i) 문서를 조사하는 것
 - (ii) 청구와 관련된 개인 혹은 단체와 상담하는 것
 - (c) 문서의 사본, 혹은 수정된 사본을 만드는 것
 - (d) 청구에 관한 중간 혹은 종국 결정을 통지하는 것
- 실무상 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 (a) 청구인이 청구하는 이유
 - (b) 기관이나 장관이 믿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이유
 - (c) 규제에 명시된 청구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대 비용

18. 청구상담 절차 (request consultation process)

1) 거부의 통지

- (a) 청구와 관련하여 문서에 대한 거부 의사
- (b) 실무상 거부 사유
- (c) 청구인이 일정기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의 사무관이나 장관 사무실의 직원(the contact person - 상담 직원)
- (d) 청구인이 상담 직원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
- (e) 청구인이 상담직원과 상담할 수 있는 기간(상담 기간)이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 날부터 14일이라는 것.

- 청구 수정에 대한 보조 조치

2) 청구인이 상담기간 내에 통지에 따라 상담 직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무상 거부사유가 없도록 청구내용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subsection (3)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청구인에게 상담직원과 상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
- (b) 청구인이 청구를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4) 상담 직원은 청구인의 동의가 있다면 상담기간을 문서로써 연장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상담기간 만료 전까지, 반드시 문서로써 기관이나 장관에 대하여 다음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청구의 철회
- (b)수정된 청구
- (c)청구를 수정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의 통지

- 6) 다음의 경우 상담기간의 종료시 법 subsection(6)에 따라 청구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 (a) 청구인이 통지를 받았음에도 상담기간 동안 상담직원과 상담하지 않은 경우
 - (b) 청구인이 상담기간의 종료 시까지 법 subsection(6)에서 언급된 조치 중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경우
- 7) 청구인이 위 법 subsection(2)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청구인이 법 paragraph(6)(b) 혹은 (c)에서 언급된 조치 중 하나를 취할 때까지의 기간은 법 paragraph15(5)(b)에서 언급된 30일의 기간을 계산하는데 산입하지 아니한다.

19. 문서의 부존재로 인한 공개거부

- 1)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의 경우 문서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 (a) 문서를 찾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모두 취한 경우
 - (b) 기관이나 장관이 문서에 관하여 다음을 충족했을 경우
 - (i) 문서가 기관이나 장관의 소유에 있지만 찾을 수 없는 경우
 - (ii) 존재하지 않는 경우
- 2) 기관은 다음의 경우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절할 수 있다.
 - (a) 법 section 6C를 준수하기 위하여, 기관이 문서를 수취하기 위한 계약상 수단을 마련했으나,
 - (b) 기관이 해당 문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 (c) 기관이 해당 문서를 수취하기 위한 계약상 수단에 따른 조취를 취했을 경우

20. 정보공개 거부이유의 제시

-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문서에 대한 공개를 거절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결정을 내린 자는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 서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사실 인정문제와 관련한 조사 결과, 조사 결과의 근거가 된 자료, 및 결정의 근거
 - (aa) 조건부 면제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고려한 요소
 - (b) 결정이 기관의 문서와 관련된 경우에 결정을 내린 자의 이름과 직책
 - (c) 불복방법
 - (i) 청구인의 결정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ii) 청구인의 결정에 관하여 정보위원회에 불만(complaint)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iii) 위 subgraph (i) 와 (ii)에서 언급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

21. 정보공개에 관한 상담

- 1) 연방과 주 간의 관계
 - 기관이나 장관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상담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 위와 같은 상담절차가 이뤄진 후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인에게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 모두에게 서면으로써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a) 주 정부(the State)
 - (b) 청구인

2) 노포크 아일랜드와 정부 간 관계

- 노포크 아일랜드 유권기관 및 노포크 아일랜드 장관은 적정한 상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청구인에게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 상담절차가 이뤄진 후, 노포크 아일랜드 유권기관 혹은 노포크 아일랜드 장관이 청구인에게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 모두에게 서면으로써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a) subparagraph(1)(a)(i)가 적용되는 경우 - 연방정부
 - (b) subparagraph(1)(a)(ii)가 적용되는 경우 - 주 정부
 - (c) 위 두 경우 모두 - 청구인

22. 영업에 관계된 문서의 정보공개 범위

1) 적용대상

- (a) 기관이나 장관에 대하여 개인, 기구, 사업체의 법 subsection (2)에서 다루는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b) 기관이나 장관이 판단하기에 관련된 개인, 기구, 혹은 사업체의 소유주의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i) 당해 문서가 법 section 47에 따라 비공개문서인 경우
 - (ii) 당해 문서가 법 section 47G에 따른 비공개문서이며 접근권의 부여가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2) 영업에 관련된 정보

- (a) 개인과 관련하여 - 개인의 사업 및 직업활동에 관한 정보
- (b) 기구 혹은 사업체와 관련하여 - 사업, 상업, 혹은 재무활동에 관한 정보

- 3) paragraph(1)(b)을 위하여, 관련된 개인이나 기구가 면제주장을 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관이나 장관은 반드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a) 정보가 알려진 정도
 - (b) 개인, 기구, 혹은 사업체가, 당해 정보가 다루고 있는 사안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지 여부
 - (c) 공공적으로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당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 (d) 기관이나 장관이 판단하기에 관련있는 다른 요소
- 4)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 (a) 관련된 개인이나 기구가 비공개 주장에 관한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 (b) 기관이나 장관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5) 법 subsection (4)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기관이나 장관이 관련된 개인이나 기구에 면제 주장에 관한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6) 기관이나 장관이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 모두에게 문서로써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a) 관련된 개인이나 기구
 - (b) 청구인
- 7) 기관이나 장관은 관련된 개인 혹은 기구의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심의 혹은 항소 기회가 소멸한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접근권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 8) subsection (6) 과 (7)은 관련된 개인이나 paragraph(4)(a)에 따라 기구가 비공개 주장에 관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23. 사생활에 관계된 문서의 정보공개 범위

- 1) 사생활에 관계된 문서는 다음을 말한다.
 - (a) 기관이나 장관에 대하여 개인(죽은 자를 포함)의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경우
 - (b) 기관이나 장관이 판단하기에 당해 개인 혹은 그의 법정대리인(이하 관련 개인 등)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
 - (i) 당해 문서가 법 section47F에 따라 비공개문서인 경우
 - (ii) 문서에 대한 공개가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 2) 법 paragraph(1)(b)을 위하여, 관련된 개인 등이 비공개 주장을 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관이나 장관은 반드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a) 정보가 알려진 정도
 - (b) 관련된 개인 등이 당해 정보가 다루고 있는 사안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지 여부
 - (c) 공공적으로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당해 정보를 얻을수 있는지 여부
 - (d) 기관이나 장관이 판단하기에 관련 있는 다른 요소
- 3)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a) 관련된 개인 등이 비공개 주장에 관한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 (b) 기관이나 장관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한 경우

- 4) 그러나, 법 subsection (3)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기관이나 장관이 관련된 개인 등에 면제 주장에 관한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5) 기관이나 장관이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 모두에게 문서로써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a) 관련된 개인 등
 - (b) 청구인
- 6) 그러나, 기관이나 장관은 관련된 개인 등의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심의 혹은 항소 기회가 소멸한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접근권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 7) 법 subsection (5) 과 (6)은 관련된 개인 등이 paragraph(3)(a)에 따라 면제 주장에 관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 8) 이 section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a) 수정된 사본의 경우 - 문서 원본과 같이 취급
 - (b)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의 경우 - 당해 문서가 그 정보를 포함하는 정도를 고려한다.

24. 정보공개의 비용

- 1) 청구인이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인에게 다음을 적시하는 통지를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a) 청구인이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책임
 - (b) 기관이나 장관의 비용 총액에 관한 초기 산정, 및 그러한 산정의 근거
 - (c) 청구인은 그 비용이 잘못 산정되었다거나 감축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

- (d) 기관이나 장관이 법 subsection(5) 에 따라 그 비용을 감축하여야 하는지,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 (e) 규제에 따라, 청구인에게 비용이 부과될 경우 기관이나 장관이 판단한 예치금의 액수
 - (f) 청구인이 기관이나 장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위 통지를 받은 지 30일 혹은 기관이나 장관이 허용하는 더 오랜 기간 내에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
 - (i) 청구인이 비용을 지불하는데 동의한다는 사실
 - (ii) 청구인이 비용이 잘못 산정되었다거나, 감축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 청구인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사실 및 그 사유
 - (iii) 청구인이 당해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를 철회한다는 사실
 - (g) 청구인이 기관이나 장관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통지를 하는데 실패한 경우,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 2) 청구인이 기관이나 장관에 대하여 위 paragraph(1)(f)에서 언급된 기간 내에 위 paragraph(1)(f)의 방법으로 통지하는데 실패한 경우,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 3) 기관이나 장관은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혹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외에는 청구인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 (a) 청구인이 기관이나 장관에 대하여 위 paragraph(1)(f)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 (b) 위 paragraph에서 언급된 기간의 종료

- 4) 청구인이 기관이나 장관에 대하여 위 paragraph(1)(f)의 방법으로, 그 비용이 잘못 산정되었다거나 감축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비용을 감축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5) 청구인이 기관이나 장관에 대하여 위 subparagraph(1)(f)(ii)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인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부과할 비용에 관한 결정을 통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 다음의 경우 기관의 수석 사무관, 혹은 장관은 그 기간의 마지막 날 부과될 비용은 위 paragraph(1)(b)에서 언급된 초기 산정 비용과 같은 액수의 비용과 같다고 결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 (a) 기관이나 장관이 위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며
 - (b) 청구인이 부과될 비용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때
- 7)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사실 및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 (a) 청구인이 비용에 관하여 위 subsection(4)에서 언급된 주장을 한 사실
 - (b) 기관이나 장관이 그 주장에 관하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
- 8) 법 subsection(8)에 따른 통지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직원의 이름과 지위를 적시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a) 청구인의 결정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b) 청구인의 결정에 관하여 정보위원회에 불만(complaint)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c) 위 paragraph (i)과 (ii)에서 언급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

25. 비공개 대상 문서

1) 비공개 문서

- 문서는 다음의 경우 이 장의 목적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문서에 해당한다.

(a) 이 법 Division 2 에 따라 면제문서인 경우

(b) 이 법 Divison 3 에 따라 조건부 면제문서에 해당하며, 당해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공이익에 반하는 경우

2) 국가안보(security), 방위(defence), 혹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들

- 문서의 공개가 다음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당해 문서는 비공개 문서에 해당한다.

(a) 다음 사안에 관하여 피해를 일으킬 경우

(i) 연방정부의 안보

(ii) 연방정부의 방위

(iii) 연방정부의 국제관계

(b) 외국정부, 외국정부의 유권기관 혹은 국제기구가 연방정부, 연방 정부 기관, 혹은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에 대하여 비밀리에 통신한 정보 혹은 사안이 누설될 경우

3) 내각 문서

(1) 문서는 다음 경우 비공개 문서에 해당한다.

(a) 다음 2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i) 내각에 검토자료로 제출되거나 장관이 그렇게 하도록 제안한 경우

(ii) 내각에 검토자료로 제출되기 위해 작성된 경우

- (b) 내각의 공식 기록에 해당하거나
 - (c) paragraph(a)에 따라 장관에게 브리핑하기 위해 작성된 경우
 - (d) 위 paragraph(a) 내지 (c)가 적용되는 문서의 초안인 경우
- (2) 위 subsection(1)이 적용되는 문서의 사본이거나, 일부거나, 축약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비공개 문서에 해당한다.
- (3) 내각의 숙의(deliberation) 혹은 결정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숙의 혹은 결정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는 면제문서에 해당한다.
- (4) 위 subsection (1) 내지 (3)이 적용되는 문서에 첨부된 문서는 그 자체로 면제문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5) 내각이 공식적으로 출판한 문서는 비공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6) 위 subsection (1) 내지 (3)이 적용되는 문서상의 정보는 순수하게 사실인정의 문제인 이상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공개되는 사안이 아니다.
- (a) 정보의 공개가 내각의 숙의나 결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경우
 - (b) 숙의 혹은 결정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
- 4) 법의 집행 및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 (1) 문서의 공개가 다음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비공개 문서에 해당한다.
 - (a) 과세에 관한 법의 위반(breach of the law)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거나, 특정 사안에 관한 법의 적절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 (b) 법에 집행에 관한 정보의 비밀, 정보원의 존재 혹은 부존재에 관한 사안을 공개하거나 개인으로 하여금 알아내게 할 수 있는 경우
 - (c) 개인의 생활 혹은 신체의 안전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경우

(2) 문서의 공개가 다음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면제 문서에 해당한다.

- (a) 개인에 관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거나 특정 사안에 관한 법의 불공정한 적용을 야기하는 경우
- (b) 위법 행위나 탈법 행위를 예방, 감지, 수사하거나 이에 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한 적법한 수단을 공개함으로써 위와 같은 수단의 효용성을 감소시키는 경우
- (c)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수단의 집행이나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2A) paragraph(1)(b)을 위하여, 다음의 보호를 위하여 연방경찰 (Australian Federal Police), 혹은 주 혹은 지역의 경찰로부터 원조를 받는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는 중이거나 받은 전력이 있는 개인은 정보의 비밀 정보원으로 간주한다.

- (i) 증인
- (ii) 증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iii) 그러한 보호가 필요한 기타의 자

(3) 이 section에서, 법률은 연방정부 혹은 주 혹은 지역정부의 법률을 의미한다.

5) 법률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는 문서

(1) 법 subsection(1A)를 조건으로, 다음의 경우 문서는 면제문서에 해당한다.

- (a) 문서 또는 그에 포함된 정보의 공개가 법률의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 (b)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
 - (i) 그러한 조항이 Schedule 3에 명시되어 있거나
 - (ii) 다른 기타의 법률상 조항에 따라 이 section이 적용된다고 명시되는 문서

- (1A) section 11 및 22에 따른 개인의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권리는 그 개인에 대한 문서 또는 그에 포함된 정보의 공개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은 경우 당해 문서가 위 subsection에 따라 면제문서인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2) subsection(3)을 조건으로, 개인이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그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상 이 section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개인이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이 section이 적용된다.
- (a) 개인이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 (b) 문서 또는 그에 포함된 정보의 공개가 1958년 Migration 법률의 section 503A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
- (4) 이 section에서 법률은 노포크 아일랜드 법률을 포함한다.
- 6) 변호사 특권의 대상이 되는 문서
- (1) 변호사 특권이 적용되는 법률상 절차에서 작성된 문서는 비공개 문서에 해당한다.
 - (2) 위와 같은 변호사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그 특권을 포기한 경우, 그 문서는 비공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다음에 해당하는 것일 뿐일 때에는 당해 문서는 위 subsection(1)에 따라 비공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a) 위 subsection에 따라 당해 문서를 비공개 문서가 되게 하는 정보(이 subsection을 제외하고)를 담고 있을 경우
 - (b) 당해 정보가 기관의 업무정보일 경우(section 8A)
- 7)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 하에서 취득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 (1) 이 법률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개인의 (기관이나, 연방정부, 노포크 아일랜드가 아닌) 신뢰에 반하게 되는 경우 당해 문서는 비공개 문서에 해당한다.

(2) 장관, 혹은 장관 사무실의 직원, 혹은 기관의 사무관이나 직원이 그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유권기관 혹은 노포크 아일랜드의 유권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로서 subsection 47C(심의절차 - deliberative processes)가 적용 (subsection 47C(2) 혹은 (3)이 아니라면 적용되는 경우)되는 경우, 당해 문서의 공개가 다음이 아닌 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에 반하게 되는 경우 위 subsection(1)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장관, 장관의 사무실 혹은 기관의 직원의 직책에 있는자
- (b) 기관, 연방정부 혹은 노포크 아일랜드

8) 의회 예산사무실 문서

(1) 정의

(a)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 (i) 의회 예산 사무실 직원 혹은 사무실에서 작성된 문서
- (ii) 당해 문서가 비밀 청구(confidential request)에 의해 마련된 경우

(b) 당해 문서가 작성된 주된 목적이 비밀 청구에 관하여 의회 예산 사무실 직원 혹은 사무실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c) 당해 문서가 의회 예산 사무실 직원의 비밀청구에 관한 정보 취득을 위한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경우

(d) 당해 문서가 위 paragraph (a) 내지 (c)가 적용되는 문서의 초안인 경우

(2) 위 subsection(1)이 적용되는 문서의 사본이거나, 일부거나, 축약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면제문서에 해당한다.

(3) 당해 문서가 담고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회 예산사무실 직원 혹은 사무실에 대하여 비밀 청구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당해 청구를 한 상원의원(senator) 혹은 하원 의원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에 의하여 그러한 청구가 있었음이 공개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문서는 면제문서에 해당한다.

(4) 위 subsection (1) 내지 (3)이 적용되는 문서에 첨부된 문서는 그 자체로 면제문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5) 위 subsection (1) 내지 (3)이 적용되는 문서 상의 정보는 그 정보가 다음에 따라 의회 예산 사무실 직원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할 경우 이 section에 따라서는 면제 사안이 되지 아니한다.

(a) 1999년 Parliamentary Service 법률 section64U에 따라

(b) 위 법률의 subsection64V(4)에 따라 만들어진 statement에 따라

(6) 위 subsection (1) 내지 (3)이 적용되는 문서상의 정보는 그 정보가 그 문서가 관련된 비밀 청구를 한 상원의원(senator) 혹은 하원의원(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할 경우 이 section에 따라서는 면제 사안이 되지 아니한다.

(7) 위 subsection (1) 내지 (3)이 적용되는 문서상의 정보는 순수하게 사실인정의 문제인 이상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공개 문서 대상 사안이 아니다.

(a) 정보의 공개가 비밀 청구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경우

(b) 비밀 청구를 한 상원의원(senator) 혹은 하원의원(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에 의하여 위 비밀청구의 존재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9) 문서의 공개가 의회나 법원을 모독하게 되는 경우

- 문서의 공개가 이 법률 및 왕실의 면책권을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 문서에 해당한다.

- (a) 법원에 대한 모독
 - (b) 선서에 따라 증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왕실위원회 (Royal Commission) 혹은 행정심판소, 개인 혹은 단체가 내린 명령이나 지시에 반하게 되는 경우
 - (c) 연방정부, 주정부의 의회 혹은 북부자치체(Northern Territory) 혹은 노포크 아일랜드의 의회나 입법회의의 특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 10) 영업 비밀(trade secrets) 혹은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
- (1) 문서의 공개가 다음을 공개하게 되는 경우 - 비공개
 - (a) 영업 비밀
 - (b) 공개될 경우 파괴되거나 사라지게 되거나 그렇게 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기타 정보
 - (2) 위 subsection (1)은 개인의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경우 효력을 갖지 않는다.
 - (a) 사업이나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그 개인의 정보가 문서에 포함된 것일 뿐일 경우
 - (b) 청구를 한 개인이 소유하거나 대리하는 사업체의 사업, 상업, 혹은 재정적 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문서에 포함된 것일 뿐일 경우
 - (c) 청구를 한 개인이 조직 자체이거나 조직을 대리하는 경우로 그 조직의 사업, 상업, 혹은 재정적 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문서에 포함된 것일 뿐일 경우
 - (3) 이 section에서의 사업체에 대한 언급은 유권기관, 연방정부, 노포크 아일랜드, 혹은 주 정부, 혹은 지역 정부 유권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11) 선거인 명부와 관련 문서

- (1) 다음과 같은 문서는 비공개 문서에 해당한다.
 - (a) 선거인 명부
 - (b) 선거인 명부의 출력물, 혹은 그러한 출력물의 사본
 - (c) 선거인 명부의 마이크로필름
 - (d) 선거인 명부가 담긴 테이프 혹은 디스크의 사본
 - (e) 다음과 같은 문서
 - (i) 특정 선거인 한 명의 명세로서
 - (ii) 선거인 명부 작성에 사용된 것
 - (f) 다음과 같은 문서
 - (i) 위 paragraph (c)에서 언급된 문서의 사본
 - (ii) 위 paragraph(e)에서 언급된 문서의 사본들로만 이루어진 문서
 - (g) 다음과 같은 문서
 - (i) 선거인의 명세로서
 - (ii) 선거인 명부로부터 나온 문서
- (2) 선거인 명부의 일부로서 선거인 한 명의 명세를 나타내는 것은 그 선거인과 관련하여서는 면제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선거인 명부의 출력물, 출력물의 사본, 마이크로필름, 테이프나 디스크로서 선거인 개인의 명세를 나타내거나 재생산하는 것은 그 선거인과 관련하여서는 면제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한명의 선거인에 관한 명세를 나타내는 문서로서
 - (a) paragraph(2)(e)에서 언급된 문서의 사본
 - (b) paragraph(2)(e), (f), 혹은 (g)에 언급된 문서의 사본은 그 선거인과 관련하여 비공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6. 조건부 비공개 대상 문서

- 1) 공공이익 조건부 비공개 문서 - 연방정부와 주 정부 관계 등
 - 이 법률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다음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면제문서에 해당한다.
 - (a)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관계에 타격을 주거나 줄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 (b) 주 정부, 혹은 주정부의 유권기관이 연방정부, 연방정부 기관, 혹은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에 대하여 비밀리에 통신한 정보 혹은 사안이 누설될 경우
 - (c) 연방정부와 노포크 아일랜드 사이의 관계에 타격을 주거나 줄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 (d) 노포크 아일랜드 정부, 혹은 노포크 아일랜드 정부의 유권기관이 연방정부, 연방정부 기관, 혹은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에 대하여 비밀리에 통신한 정보 혹은 사안이 누설될 경우 혹은
 - (e) 노포크 아일랜드와 주 정부 사이의 관계에 타격을 주거나 줄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 (f) 주 정부, 혹은 주정부의 유권기관이 노포크 아일랜드 정부, 노포크 아일랜드 정부 기관, 혹은 노포크 아일랜드 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에 대하여 비밀리에 통신한 정보 혹은 사안이 누설될 경우
- 2) 공공이익 조건부 비공개 - 심의 절차(deliberative processes)
 - (1) 이 법에 따른 문서의 공개가 다음 조직의 기능과 관련하여, 심의 절차의 과정이나 목적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마련되거나, 기록된 의견이나 조언, 혹은 추천이나 상담이나 심의의 성질을 갖는 사안을 공개하게 되는 경우 당해 문서는 비공개 문서에 해당한다.
 - (a) 기관

- (b) 장관
 - (c) 연방 정부
 - (d) 노포크 아일랜드 정부
- (2) 심의사안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업무정보(operational information)
 - (b) 순수한 사실인정의 문제
- (3) 이 section은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과학 혹은 기술 전문가의 보고서, 이 경우 당해 전문가가 기관에 고용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하며, 그 전문가가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포함한다.
 - (b) 기관 내에 설치된 단체나 조직의 보고서로 규제에 적시된 경우
 - (c) 권한 행사 혹은 판결 기능에 따라 내려진 최종 결정의 선언 혹은 기록
- 3) 공공이익 조건부 비공개 - 연방정부 혹은 노포크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적 혹은 재산상 이익
- 이 법에 따라 문서를 공개할 경우 연방 정부, 노포크 아일랜드 정부 혹은 기관의 재정적 혹은 재산상 이익에 현저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경우 그 문서는 면제문서에 해당한다.
- 4) 공공이익 조건부 비공개 - 기관의 특정 업무(operation)
- 이 법에 따라 문서를 공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그 문서는 면제문서에 해당한다.
 - (a) 기관의 실험, 조사 혹은 감사 활동의 수단이나 절차의 효용성을 방해할 경우
 - (b) 기관이 수행하거나 수행하기로 예정된 특정 실험, 조사, 혹은 감사 활동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방해가 될 경우

- (c) 연방정부 혹은 노포크 아일랜드, 혹은 기관의 인사에 관한 관리나 평판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경우
- (d) 기관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업무 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경우.

5) 공공이익 조건부 비공개 - 개인 사생활

- (1) 이 법에 따라 문서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죽은 자 포함)개인정보를 불합리하게 공개될 경우 비공개 문서에 해당한다.
- (2) 문서의 공개가 개인정보를 불합리하게 공개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관이나 장관은 반드시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a) 정보가 알려진 정도
 - (b) 관련된 개인 등이 당해 정보가 다루고 있는 사안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지 여부
 - (c) 공공적으로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당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 (d) 기관이나 장관이 판단하기에 관련있는 기타 사안
- (3) subsection(5)를 조건으로, subsection(1)은 개인의 문서에 대한 접근권의 청구시 그 개인에 대한 사안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 (4) subsection(5)는 다음의 경우 적용된다.
 - (a) 청구인에 관한 정보로서 자격있는 자가 그러한 지위에서 제공한 정보를 담은 기관이나 장관의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 (b) 기관이나 장관이 판단하기에 청구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청구인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 혹은 건강한 삶에 해가 될 경우

- (5) 수석 사무관이나 장관은 문서에 대한 접근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상태로, 청구인이 아닌 다음과 같이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이를 부여할 수 있다.
 - (a) 최우선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법 subsection(7)에서 언급된 종류의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 (b) 청구인에게 지명된 자
- (6) 이 section 아래의 수석 사무관의 권한 및 기능은 section 23에서 언급된 방식에 따라 수권된 범위 내에서 기관의 다른 직원이 행사할 수 있다.
- (7) 이 section에서 자격있는 자란 청구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또는 건강한 삶에 관한 보호를 제공하는 직업을 가진 자를 의미 하며, 위와 같은 일반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자를 포함한다.
 - (a) 의사
 - (b) 정신과 의사
 - (c) 심리학자
 - (d) 상담가
 - (e) 사회복지사
- 6) 공공이익 조건부 비공개 - 사업관련
 - (1) 이 법에 따라 문서를 공개할 경우 공개되는 정보가 개인의 사업이나 직업 활동 혹은 조직이나 사업체의 사업, 상업, 재정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정보의 공개가 다음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그 문서는 비공개 문서에 해당한다.
 - (a) 청구인의 적법한 사업이나 직업 활동 혹은 조직, 사업체의 적법한 사업, 상업, 재정적 활동에 불합리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 (b) 연방정부나 territory의 법 집행 혹은 기관의 사무 집행을 위한 장래의 정보의 공급에 방해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 (2) subsection(1)은 section47이 적용되는 영업 비밀이나 기타 정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위 subsection (1)은 개인의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경우 효력을 갖지 않는다.
 - (a) 사업이나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그 개인의 정보가 문서에 포함된 것일 뿐일 경우
 - (b) 청구를 한 개인이 소유하거나 대리하는 사업체의 사업, 상업, 혹은 재정적 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문서에 포함된 것일 뿐일 경우
 - (c) 청구를 한 개인이 조직 자체이거나 조직을 대리하는 경우로 그 조직의 사업, 상업, 혹은 재정적 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문서에 포함된 것일 뿐일 경우
- (4) 이 section에서의 사업체에 대한 언급은 유권기관, 연방정부, 노퍽 아일랜드, 혹은 주 정부, 혹은 지역 정부 유권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 (5) 법 subsection (1)의 목적을 위하여, 당해 정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종사자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것일 뿐인 경우, 그 정보는 그의 직업활동의 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공공이익 조건부 비공개 - 연구관련

- 문서는 다음의 경우 조건부 면제문서에 해당한다.

- (a) 법 Schedule 4에서 명시된 기관의 사무관이 수행한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b) 연구가 완료되기 전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기관이나 사무관에게 불합리하게 피해를 주는 경우

8) 공공이익 조건부 비공개 - 경제관련

- (1) 이 법에 따라 문서를 공개하는 경우 다음에 의하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제에 현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그럴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 (a) 개인이나 법인격의 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b) 개인에게 가능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설부른 지식의 제공으로 인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경우
- (2) 다음에 관련된 정보
 - (a) 환율
 - (b) 이자율
 - (c) 소비세, 관세를 포함하는 각종 세율
 - (d) 은행, 보험 그리고 다른 재정 기구에 관한 규제 혹은 지도
 - (e) 공공지출에 관한 제안
 - (f) 오스트레일리아 내 외국 자본의 투자
 - (g) 연방정부, 노포크 아일랜드, 주 정부, 혹은 연방정부, 노포크 아일랜드, 주 정부 유권기관의 부채

27. 개인기록의 수정 및 주석

1) 개인기록의 수정 및 주석에 대한 청구

- 기관이나 장관이 이 법률에 따르거나 다른 이유로 적법하게 접근권을 부여한 문서에 대하여, 그 접근권을 부여받은 개인이 당해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다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 (a) 그 개인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오래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 (b) 그 개인정보가 기관이나 장관의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거나 현재 사용중이거나 사용에 제공된 경우

- 개인은 그 개인정보에 관하여 기관이나 장관에 대하여 다음을 청구할 수 있다.
 - (a) 수정
 - (b) 주석
- 2) 수정에 관한 청구의 요건
 - 수정에 관한 청구는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a) 문서로써 이뤄져야 한다.
 - (b) 다음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i) 수정을 요하는 개인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 혹은 공식 문서
 - (ii) 불완전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오래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보
 - (iii) 위 사유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iv) 청구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
 - (v) 수정의 내용
 - (c) 청구인이 이 Part에 따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내 주소
 - (d) 기관이나 장관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기관의 사무관 혹은 장관의 직원에게 paragraph 15(2)에 따른 기관 혹은 장관의 주소로 보내야 한다.
- 3) 기록의 수정
 - (1) section 51C를 조건으로, 청구를 받은 기관이나 장관이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그 기관이나 장관은 정보의 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
 - (a) 청구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기관의 문서 혹은 장관의 공식 문서에 포함된 경우
 - (b) 그 개인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오래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 (c) 그 개인정보가 기관이나 장관의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거나 현재 사용 중이거나 사용에 제공된 경우
 - (2)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수정을 가할 수 있다.
 - (a) 당해 문서나 공식 문서로 하여금 완전하고, 사실에 부합하며, 최신의, 오해의 소지가 없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변경하거나
 - (b) 문서나 공식문서에 다음과 같은 노트를 첨부하는 방법
 - (i) 기관이나 장관이 당해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등 인정한 개인정보를 명시
 - (ii) 기관이나 장관이 당해 정보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경우 - 그러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는 내용
 - (3) 가능한 한, 기관이나 장관은 법 paragraph(2)(a)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이전 기록의 텍스트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 4) 기록의 수정을 위한 청구가 불완전 한 경우 기록에 대한 주석
- (1) 기관이나 장관이 법 SECTION 48 아래의 청구에 대하여 기관이나 장관의 문서 또는 공식 문서를 전체적으로, 혹은 일부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반드시 다음을 하여야 한다.
 - (a) 청구인으로 하여금 법 paragraph 51A(c)에서 언급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 (b) 법 subsection(2)를 조건으로, 문서나 공신 문서에 주석을 달아 위와 같은 청구인의 진술 첨가
 - (2) 법 paragraph (1)(b)는 기관이나 장관이 그 진술이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불명예스럽거나, 불필요하게 양이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3) 이 법을 위하여, 위 subsection(1)에 따른 청구인의 진술이 제공된 날 청구인은 section51A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주식에 관한 청구의 요건

- 주식의 관한 청구는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a) 문서로써 이뤄져야 한다.
 - (b) 주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보가 포함된 문서 혹은 공식 문서를 특정하여야 한다.
 - (c) 청구인은 다음을 특정하는 진술을 하여야 한다.
 - (i) 불완전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오래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보
 - (ii) 위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iii) 청구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
 - (iv) 위 정보를 완전하게 하거나, 사실과 부합하게 하거나, 최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는 다른 정보
 - (d) 청구인이 이 Part에 따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내 주소
 - (e) 기관이나 장관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기관의 사무관 혹은 장관의 직원에게 paragraph 15(2)(d)에 따른 기관 혹은 장관의 주소로 보내야 한다.

6) 기록에 관한 주식

- (1) 법 section 51C를 조건으로, 청구를 받은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의 대상이 된 개인 정보의 기록이 기관의 문서 혹은 장관의 공식 문서에 포함되었음이 충족된 경우에는, 반드시 청구인이 paragraph 51A(c)에 따라 제시한 진술을 첨부함으로써 기관의 문서 혹은 장관의 공식문서에 주석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법 subsection(1)은 기관이나 장관이 판단하기에 위 진술의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불명예스럽거나 불필요하게 양이 많은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청구의 이송

- (1) 기관이나 장관에 대하여 section 48에 따른 청구가 있었으며
 - (a) 당해 문서가 해당 기관의 소유가 있지 않으나, 다른 기관이 당해 문서를 소유하고 있음을 청구를 받은 기관이 알고 있을 경우
 - (b) 문서의 주요 내용이 청구를 받은 기관보다 다른 기관의 기능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 청구를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청구를 해당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 (2) 청구와 관련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기관이 section 48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
 - (a) Schedule 2의 Part I에서 명시된 단체나 개인이 작성하거나 수취한 문서
 - (b) 위 문서가 위 청구를 받은 기관보다 위 단체나 개인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에 그 청구는 다음의 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다.
 - (c) 위 단체나 개인이 설립되거나 위촉된 근거가 되는 법률을 집행하는 장관이 관리하는 부서(Department of State)에 대응하는 부서
 - (d) 위 문서가 Schedule 2의 Part I의 Division2의 명시된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에 의해 작성되거나 수취된 경우 - 그 부서로
- (3) 기관이나 장관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한 section 48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 (a) Schedule 2의 Part II에 명시된 기관 혹은 Schedule 2의 Part III에서 명시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기관에 의해 작성되거나 수취된 문서이며,
 - (b) 당해 문서가 청구를 받은 기관보다 이 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다른 기관에 보다 밀접한 연관되는 경우 청구를 받은 기관은 그 청구를 위 다른 기관에 이전할 수 있다.

- (4) 다음의 경우 이 section은 위 각 문서에 대해 별개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와 같이 적용된다.
 - (a) 기관이나 장관이 둘 이상의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관련하여 section 48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또한
 - (b) 그 중 하나 이상의 문서에 대하여 위 subsection (1) 내지 (3)이 적용되는 경우
- (5) 이 section에 따라 다른 기관에 대하여 청구가 이전된 경우, 청구를 이전하는 기관은,
 - (a) 이를 청구한 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 (b) 다른 기관이 청구를 처리하기에 필요한 경우 문서를 다른 기관이나 장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6) 이 section에 따라 청구가 이전된 경우, 청구는 다음과 같이 간주한다.
 - (a) 이전의 대상이 된 기관에 대한 section 48에 따른 청구
 - (b) 청구를 이전한 기관에 당초 도달한 시점에 이전받은 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본다.
- (7) 기관이나 장관의 처리방법
 - (a) 청구가 이 section에 따라 다른 기관이나 장관에 이전되었으며,
 - (b) 청구를 이전받은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그 정보에 주석을 달기로 결정을 내린 경우 청구를 이전받은 기관이나 장관은 문서로써,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청구를 이전한 기관이나 장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c) 그 결정의 내용
 - (d) 수정사항 혹은 주석의 내용
- (8) 위 subsection(7)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의 소유자인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청구의 이전을 받은 기관이나

장관과 같은 방법으로 통지의 내용과 동일하게 문서를 수정하거나, 주석을 첨부하여야 한다.

8) 수정결과의 통지 등

- (1)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를 받은 경우, 그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기관이나 장관에 청구가 도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 결정에 관한 통지를 수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section 23은 section 48에 따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적용된다.
- (3) section 26은 이 Part에 따른 청구에 대한 수정이나 주석에 대한 거부결정에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결정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9) 수정의 거부제

- 수정이나 주석 청구에 대해 기간 내에 결정이 없었던 경우에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요건

- (a) 기관이나 장관에 대하여 section 48에 따른 청구가 있었으며,
- (b) section 51D에서 언급된 기간이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를 수취한 날로부터 만료한 경우
- (c) 결정에 관한 통지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처리방법

- (a) 기관의 수석 사무관 혹은 장관은 당초 결정기간의 마지막 날 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이에 대한 주석을 첨부하는데 관한 거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한다.
- (b) 청구인에 대한 결정 통지는 section 26에 따라 같은 날 발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28.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내부심의

1) 비공개 문서 주장

- 이 법에 있어서 다른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만일 특정 문서가 존재한다면 section 33 혹은 34에 따라 면제문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그 문서의 존부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에 대한 비공개 문서 주장으로 간주한다.

2) 정보공개 거부결정(access refusal decision)

- (a) 청구인에게 청구에 따른 문서에 대한 접근권 부여를 거부하는 결정
- (b) 청구에 따른 완전한 접근권이 아닌 일부에 대한 접근권만을 부여하기로 하는 결정
- (c) 청구에 따라 청구에 관련된 모든 문서들에 관하여 접근권을 부여하는 듯한 결정
- (d)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유예하기로 한 결정
- (e) 법 section 29 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결정
- (f) subsection 47F에 따라 다른 자격있는 자에 대하여 접근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결정
- (g) section 48에 따른 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
- (h) section 48에 따른 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주석을 첨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

3) 영향을 받는 제3자(affected third party)

- (1) 공개결정의 영향을 받는 제3자는 다음과 같은 표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다.

제 3 장 정보공개법제의 주요내용

순 번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당해 문서의 영향을 받는 제3자
1	법 section 26A(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에 따라 주 정부와 상담 (consultation)이 요구되는 경우	주정부
1A	법 section 26AA(노포크 아일랜드의 정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에 따라 연방정부와의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2	사업 정보와 관련하여 section 27(사업상 문서)가 적용되는 경우	관련된 개인 혹은 조직
3	살아있는 자에 관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section 27A(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가 적용되는 경우	그 개인
4	죽은 자에 관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section 27A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가 적용되는 경우	죽은 자를 대표하는 자

(2) 위 표의 1과 관련하여, 주 정부는 section 26A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4)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내부심의 청구

(1) 이 section은 수석 사무관 혹은 책임 있는 장관이 직접 결정을 내린 경우가 아닌 이상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적용된다.

(2) 문서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제3자는 이 part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내부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5) 내부심의를의 청구

(1) 내부심의의 청구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 (a) 청구인(내부심의 청구인)에게 내부심의를 관한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혹은 기관이 허용하는 기간 내에 청구한다.
- (b) paragraph 53A(b), (c), 혹은 (f)에서 언급된 공개거부 결정의 경우, 다음 기간 중 나중에 경과하는 기간 만료 이전
 - (i) 위 결정이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0일 혹은 기관이 허용하는 더 오랜 기간
 - (ii) 위 paragraph에서 언급된 접근권이 부여된 날부터 15일
- (2)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기관의 결정은 위와 같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뤄질 수 있다.
- (3)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기관의 결정은 기관의 사무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뤄질 수 있다.
 - (a) 그가 행사 가능한 권한의 범위 내
 - (b) 기관의 수석 사무관이나 책임 있는 장관이 승인한 바에 따라
- 6) 내부심의 후 결정 절차
 - (1) 의의
 - (2) 기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원결정- original decision- 을 내린 사람과 다른)으로 하여금 결정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위 공무원은 기관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 (4) 법 section 26은 이 section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적용된다.
- 7) 내부심의 후 원결정(original-decision) 유지 결정
 - (1) 요건
 - (a) 기관에 대해 내부 심의에 관한 청구의 존재
 - (b) 기관에 청구가 도달한 날부터 30일의 당초 결정기간(the initial decision period)이 경과

- (c) 청구에 관한 결정 통지가 내부심의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 (2) 효과
 - (a) 기관의 수석 사무관은 당초 결정기간 마지막 날 직접 원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한다.
 - (b) 위 유지결정의 통지는 같은 날 내부심의 청구인에게 발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 (3) 관련 기관은 문서로써 정보위원회에 대하여 청구를 처리할 추가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 (4) 정보위원회는 그가 판단하기에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를 처리하기에 합당한 추가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29. 정보위원회에 의한 심의

- 1) 정보위원회의 심의
 - (1) 정보위원회 심의란 정보위원회 심의가 가능한 결정에 관하여 정보위원회가 행한 심의를 의미한다.
 - (2) 정보위원회 심의청구란 법 Division 4에 따라 정보위원회 심의가 가능한 결정에 관하여 심의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정보위원회 심의 청구인이란 section 54L 혹은 54M에 따라 정보위원회 심의를 청구한 사람을 의미한다.
 - (4) 정보위원회 심의가 가능한 결정
 - (a) 법 subsection 54L(2)에서 다루는 결정(정보공개 거부결정)
 - (b) 법 subsection 54M(2)에서 다루는 결정(정보공개 결정)
- 2) 정보공개 거부결정
 - (1) 아래 subsection (2) 에서 다루는 결정에 관하여 정보위원회에게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2) 이 subsection 은 다음과 같은 결정에 관하여 다룬다.
 - (a) 정보공개 거부결정
 - (b) 정보공개 거부결정에 관하여 기관이 내부심의를 따라 내린 결정(section 54C)
 - (c) 정보공개 거부결정에 관하여 내부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을 거부하는 결정(section 54B)
 - (3) 정보위원회 심의에 관한 청구는 그 결정에 관련된 청구를 한 개인에 의하여 혹은 그를 위하는 지위에서 이뤄질 수 있다.
- 3)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
- (1) 아래 subsection (2) 에서 다루는 결정에 관하여 정보위원회에게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2) 이 subsection은 다음과 같은 결정에 관하여 다룬다.
 - (a) 정보공개 결정
 - (b) 정보공개 결정에 관하여 기관이 내부심의를 따라 내린 결정 (section 54C)
 - (3) 정보위원회 심의에 관한 청구는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하여 혹은 그를 위하는 지위에서 이뤄질 수 있다.
 - (a) 위 subsection (2)에서 다루는 결정에 관한 영향을 받는 제3자 (section 53C)
 - (b) paragraph(2)(b)의 경우 - 그 결정과 관련한 청구를 한 자.
- 4) 정보위원회 심의청구
- (1) 정보위원회 심의 청구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a) 정보위원회 심의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단을 적시하여야 한다.
 - (b) 정보위원회 심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위원회 심의가 가능한 결정에 관한 법 section 26에 따른 결정통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정보위원회 심의청구는 청구인이 정보위원회 심의가 가능한 결정에 관하여 다투는 주요 사항에 관한 상세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

- (3) 오스트레일리아 정보위원 사무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a) 정보위원회 심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
 - (b) 정보위원회 심의청구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자.
- (4) 정보위원회 심의청구는 반드시 정보위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정보위원회 심의청구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에 의하여 송달될 수 있다.
 - (a) 청구 당시의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정보위원의 주소로의 송달
 - (b) 위 paragraph (a)에서 언급된 주소로의 선불 우편송달
 - (c) 정보위원에 의해 명시된 전자통신 주소로의 송달
- 5) 영향을 받는 제3자에 대한 통지의무
 - (1) 대상
 - (a) 기관이나 장관이 section 26A, 26AA, 27, 혹은 27A에 따라 상담 (consultation)이 필요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결정을 내린 경우
 - (b) 위 결정에 대하여 정보위원회 심의청구가 있는 경우에 통지할 의무
 - (2) 기관이나 장관은 가능한 빨리, 청구의 대상이 된 문서에 관하여 영향을 받는 제3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기관이나 장관은 가능한 빨리, 통지의 사본을 정보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6) 심의청구의 철회
 - (1) 정보위원회 심의 청구인은 정보위원이 법 section 55K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문서로써 정보위원회 심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 (2) 정보위원회 심의 청구가 철회된 경우 애초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7) 정보위원회 심의청구 기한

- (1) 법 subsection 54L(2)(정보공개 거부결정)에서 다루는 결정에 관한 정보위원회 심의 청구는 반드시 법 section 26에 따라 정보위원회 심의가 가능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2) subsection 54M(2)(정보공개 결정)에서 다루는 결정에 관한 정보위원회 심의청구는 반드시 다음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a) 내부심의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 내려진 결정에 관련된 문서에 관하여 영향을 받는 제3자에게 법 section 54C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
 - (b) 그 외의 경우 - 내려진 결정에 관련된 문서에 관하여 영향을 받는 제3자에게 section 26A, 26AA, 27, 혹은 27A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

8) 정보위원회 심의청구 기간의 연장

- (1) 개인은 정보위원회 심의의 청구를 하기 위한 기간의 연장을 정보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 (2) 정보위원은 모든 상황에 비추어 보아 합당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위 기간 연장은 법 section 54S에서 언급된 기간이 만료한 후라도 가능하다.
- (4) 위에 따른 청구를 판단하기 전, 정보위원은 정보위원회 심의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위원이 판단하기에 청구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한 사람에 대하여 위 청구에 관하여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5) 위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정보위원에 대하여 문서로써 위에 따른 청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 (6) 법 subsection (5)에 따른 통지가 있었던 경우, 정보위원은 위 subsection (1)에 따른 청구를 판단하기 전, 정보위원회 심의 청구인 및 위 section (4)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에게 그들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정보위원회 심의회부 결정

- (1) 정보위원회 심의청구 일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2) 정보위원은 정보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를 할 수 있다.
- (3) 정보위원은 다음의 경우 정보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계속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a) 정보위원이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i) 정보위원회 심의청구가 경솔하거나, 불명예스럽거나, 잘못된 판단에 기초하거나, 논의의 핵심이 결여된 경우이거나 올바른 신념에 기초한 것이 아닌 경우
 - (ii) 정보위원회 심의청구인이 정보위원회 심의청구, 정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은 경우
 - (iii) 정보위원이 적절한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정보위원회 심의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b) 정보위원이 이 법률의 이익(interests)을 위하여 해당 정보위원회 심의가 가능한 결정이 행정심판소에서 검토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c) 정보위원회 심의 청구인이 정보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 심의하지 않기로 하는 재량권 행사시 통지의 요건

- (1) 정보위원이 정보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계속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적용된다.

- (2) 정보위원회는 가능한 빨리, 심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결정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 (3) 통지의 방법
 - (a) 정보위원회의 결정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 (b) 정보위원회가 paragraph 54W(b)에 따른 결정을 내린 경우 - 정보위원회 심의 가능한 결정에 관하여 행정심판소의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적시해야 한다.
- (4) 통지는 다음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a) 비공개 정보
 - (b) subsection 25(1)에서 언급된 종류의 정보.

11) 심의회부 결정

- (1) 요건
 - (a) 기관이나 장관이 subsection 15AC(3), 51DA(2), 혹은 54D(2)에 따라 결정(간주된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b) 간주된 결정에 관하여 정보위원회 심의청구 제기
 - (c) 정보위원회가 간주된 결정과 관련하여 법 section 54W(심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혹은 법 section 55K(심의에 따른 결정)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 (d) 기관이나 장관의 실제로 내려진 결정에 관하여 subsection 15AC(7), 51DA(6), 혹은 54D(6)이 적용되는 경우
- (2) 정보위원회는 간주된 결정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의청구를 실제로 내려진 결정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의 청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12) 정보위원회 심의의 절차

- (1) 정보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기 전에 정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 (a) 결정을 내린 자, 기관, 혹은 장관
- (b) 법 section 54M에 따른 정보위원회 심의청구가 있었던 경우 -
청구를 한 자
- (2) 정보위원은 정보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심리 기일 없이 정보위원
에게 제기되거나 제공된 문서들 혹은 다른 매체를 심사하는 방법
만으로 정보위원회 심의 가능한 결정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 (a) 정보위원이 판단하기에, 정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고려되어
야할 요소들이 리뷰 당사자의 참여 없이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경우
 - (b) 정보위원이 판단하기에, 정보위원이 심리 기일을 여는 것을
정당하게 만드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경우
 - (c) 심의 당사자 중 누구도 section 55B에 따른 심리기일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3) 정보위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a) 그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수단으로 정보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 (b) 정보위원회 심의의 쟁점에 관하여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분쟁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c) 여러 통신수단을 동원하여 정보위원회 심의에 타인을 참가시
킬 수 있다.
 - (d) 그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심문을 할 수 있다.
 - (e)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지시사
항을 문서로써 전달할 수 있다.
 - (i) 정보위원회 심의 일반
 - (ii) 특정 정보위원회 심의

- (4) 위 paragraph (2)(e)에 따라 전달된 지시사항은 입법 문서(legislative instrument)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위 subsection(2)을 제한함이 없이, 정보위원회는 정보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반드시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 (a) 정보위원회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할 때 가능한 최소한의 격식 및 기술성을 동원해야 한다.
 - (i) 이 법의 요건
 - (ii) 다른 법의 요건
 - (iii) 정보 위원회의 판단
 - (b) 각 심의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c) 위 subparagraph (a)(i) 내지 (iii)에서 언급된 요소를 고려할 때 최대한 시기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정보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6) 정보위원회가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 정보위원회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 (a) 다음을 이유로 비공개로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심리기일을 공개적으로 열어야 한다.
 - (i) 절차와 관련된 증거 혹은 사안의 기밀적 성격이 있을 때
 - (ii) 다른 이유가 있을 때
 - (b)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 (c) 당사자 일방의 기밀적 성격이 있는 증거 혹은 사안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불출석 한 상태에서 심리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 13) 정보위원회 심의의 절차에서의 당사자
- (1) 정보위원회 심의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 (a) 정보위원회 심의 청구인
 - (b) 청구의 대상이 된 기관의 수석 사무관 혹은 장관
 - (c) 법 section 54P에 따라 정보위원회심의 청구에 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할 영향을 받는 제3자
 - (d) 법 subsection (3)에 따른 절차상 당사자 (parties to proceeding)
- (2) 정보위원회 심의가 가능한 결정에 관하여 정보위원회 심의청구가 있었던 경우, 정보위원회 심의가 가능한 결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자는 문서로서 정보위원회에 대하여 심의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 (3) 정보위원회는 문서로써, 위 subsection (2)에 따른 청구를 한 자를 정보위원회 심의의 당사자로 할 수 있다.
- 14) 정보위원회 심리기일의 청구
- (1) 심의 당사자는 정보위원회에게 정보위원회 심의를 위한 심리기일을 열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정보위원회는 위와 같은 청구에 관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정보위원회는 반드시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 (a) 모든 심의 당사자에게 청구에 관하여 의견제시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b) 심리 기일을 열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5) 정보위원회 심의의 절차에서의 대리
- 정보위원의 심리기일에 심의 당사자는
 - (a) 직접 출석하거나
 - (b) 다른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 16) 정보위원회 심의의 절차에서의 입증 책임(onus)
- (1) 법 subsection (2)를 조건으로, section 48에 따른 청구 혹은 신청에 관한 정보위원회 심의에서, 관련 기관이나 장은 다음과 같이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 (a) 위 신청 혹은 청구에 대해 내려진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
 - (b) 정보위원은 정보위원회 심의 청구인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
 - (2) section 54M(정보공개결정)에 따른 결정에 관하여 정보위원회 심의가 청구된 경우, 그 결정에 관련된 문서에 관하여 영향을 받는 제3자는 그 결정에 관한 정보위원회 심의에서 다음과 같이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 (a) 청구를 기각(decision refusing the request)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
 - (b) 정보위원이 청구를 한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
- 17) 정보위원회에 대한 협조
- 정보위원회 심의에서, 정보위원회 심의가 가능한 결정을 내린 기관이나 장관은 반드시 정보위원이 정보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보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18) 의사결정자에 의한 불충분한 근거제시 시의 처리
- (1) 요건
 - (a) 기관이나 장관에 의해 내려진 정보위원회 심의 가능한 결정에 대하여 정보위원회 심의청구가 있었던 경우
 - (b) 기관이나 장관이 section 26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의 근거에 관하여 진술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우
 - (c) 정보위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 (i) 진술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 (ii) 제공된 진술이 부적절한 경우

- (2) 정보위원회는 문서에 의한 통지로서 기관이나 장관에 대하여 section 26(1)에 따른 적절한 근거에 관한 진술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3) 정보위원회가 위 subsection (2)와 같은 통지를 한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정보위원회 심의 청구인 및 정보위원회에 적절한 근거에 관한 진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 (a) 통지에서 명시된 기간 내
 - (b) 통지에서 기간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경우 - 기관이나 장관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28일

19) 심의 당사자의 합의도달

- (1) 이 절차는 정보위원회 심의 중
 - (a) 심의당사자들이 다음에 관하여 정보위원회 심의의 결정 조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 (i) 정보위원회 심의청구에 관하여
 - (ii) 정보위원회 심의청구 일부분에 관하여
 - (iii) 정보위원회 심의청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 (b) 합의내용이 모든 심의 당사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c) 합의 조건이 문서로 작성되고, 심의 당사자들 혹은 그를 대변하는 자의 서명이 있는 상태에서 정보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 (d) 정보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위의 내용에 따르거나 그와 일치하는 결정이 정보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정보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a) 정보위원회 심의에 관한 정보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합의의 경우 - 정보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지 않고 합의 조건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b) 절차의 일부분 혹은 절차상 발생하는 사안에 관한 합의의 경우
 - 정보위원회는 정보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정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지 않고 그에 관한 합의조건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20) 정보공개 거부결정의 철회 혹은 변형

- (1) 기관이나 장관은 section 48에 따른 요청 혹은 청구에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결정에 관한 정보위원회 심의 과정 중 어느 때나, 당초 정보공개 거부결정의 변경 혹은 대체가 다음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그 거부결정을 변경(무효화, 혹은 대체)할 수 있다.

- (a) 청구에 따라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경우 혹은
- (b) 정보위원회 심의 청구인의 비용 부담책임을 경감하거나 혹은
- (c) 청구에 따라 개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주석을 첨부하는 경우

- (2) 기관이나 장관이 위 subsection (1)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결정을 변경(혹은 무효화 혹은 대체)하는 경우

- (a) 기관이나 장관은 위와 같은 결정의 변경 후 가능한 빨리 문서로써 정보 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b) 정보위원회는 변경된 결정에 관하여 원결정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의청구가 변경된 결정에 대한 청구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1)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에 대한 법률문제 문의

- (1) 정보위원회는 정보위원회 심의 과정 중 정보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에 문의할 수 있다.

- (2) 정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다.

- (a) 심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 (b) 정보위원의 주도하에
 - (3)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은 위 법률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판단할 관할권을 갖는다.
 - (4)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의 관할권은 법원의 단독판사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 (5) 법률문제가 문의된 경우 정보위원은 정보위원회심의를 위하여.
 - (a)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이 문의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기 전 그 법률문제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 (b)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의 의견과 불일치하는 절차 진행을 하거나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 22)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에 대한 문서의 송부 혹은 공개
- 법 section 55H에 따라 법률문제가 문의된 경우
 - (a) 정보위원은 정보위원회 평가 및 문의와 관련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와 정보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b) 위 문의에 관한 절차가 종료되는 때 연방법원은 모든 문서를 정보위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23) 정보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정
- (1) 정보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후 정보위원은 문서로써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a) 정보위원회 심의 가능한 결정을 확인하는 결정
 - (b) 정보위원회 심의 가능한 결정을 변경하는 결정
 - (c) 정보위원회 심의 가능한 결정을 무효화하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
 - (2) 정보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위원은 정보위원회 심의 가능한 결정을 내린 자의 기능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3) 정보위원의 정보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정은 당해 정보위원회 심의가 가능한 결정을 내린 기관이나 장관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4) 정보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결정의 이유적시
 - (b) 심의 당사자의 위 결정에 관하여 법 section 57에 따라 행정심판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적시
 - (5) 그러나, 정보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 (a) 법 subsection 25(1)에서 언급된 종류의 정보
 - (b) 비공개 사안
 - (6) 정보위원은 각 심의 당사자에게 결정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7) 문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위원회 심의에 관한 진실한 증거로 여겨진다(*prima facie evidence*).
 - (a) 당해 문서가 위 결정문의 사본으로 주장되는 경우
 - (b) 당해 문서가 정보위원에 의하여 결정문의 진정한 사본으로 보증된 경우
 - (8) 정보위원은 정보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정을 대중에 공개하여야 한다.
- 24) 정보위원회는 비공개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할 권한은 없다.
- (1) 이 section은 정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당해 문서가 비공개 문서임이 확인된 경우 적용된다.
 - (2) 정보위원은 당해 문서가 면제 사안을 포함하는 이상 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
- 25) 기록 수정의 제한
- (1) 정보위원은 법 section 55K에 따른 결정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의견의 기록의 수정을 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a) 의견이 사실 착오에 바탕을 둔 것이거나
 - (b) 의견의 기록자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나 자격이 없었던 경우, 혹은 의견 형성의 기초가 된 사실 조사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경우
- (2) 정보위원회는 법 section 55K에 따른 결정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기록의 수정을 요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 (a) 당해 기록이 법률에 따라 법원, 행정심판소, 유권기관 혹은 개인이 내린 결정의 기록인 경우
 - (b) 기록을 수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며, 이는 기관(내부 심의), 정보위원회, 법원 혹은 행정심판소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
- (3) 여기서 법률은 노포크 아일랜드 법률을 포함한다.
- 26) 기관에 불리한 결정의 집행
- (1) 만일 기관의 수석 사무관 혹은 장관이 법 section 55N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에 수석 사무관 혹은 장관으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2) 위 청구는 다음에 의하여 이뤄질 수 있다.
 - (a) 정보위원회
 - (b) 정보위원회 심의 청구인
 - (3) 법원은 수석 사무관 혹은 장관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별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4) subsection (1)에 따른 청구는 다음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a) section 57A에 따른 정보위원회 결정에 관하여 행정심판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 (b)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 위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27) 오류의 수정

- (1) 정보위원회는 section 55K에 따른 정보위원의 정보위원회심의회에 따른 결정상의 명백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 (2)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a) 심의 당사자의 청구하에
 - (b) 정보위원의 주도하에

30. 정보 수집 권한

1) 정보 및 문서의 생성 의무 부과

- (1) 이 규정은 정보위원이 개인이 정보위원회 심의회 관련된 정보, 혹은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
- (2) 이 규정은 법 section 55T 및 55U를 조건으로 적용된다.
- (3) 정보위원회는 문서에 의한 통지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정보위원회 심의회를 위하여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a) 통지에 명시된 종류의 정보를 정보위원회에게 전달할 것
 - (b) 통지에 명시된 문서를 생산하여 정보위원회에게 교부할 것
- (4) 위 통지의 형식
 - (a) 문서로써 해야한다.
 - (b) 위 통지를 준수할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 (c) 다음 기간 혹은 시점에 준수할 것을 적시하여야 한다.
 - (i) 위 통지를 수령한 후 14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명시된 기간
 - (ii) 위 통지를 수령한 후 14일 이내의 시점으로서 명시된 시점
- (5)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 (a) 위 통지에 명시된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또한
 - (b) 그 자의 행동이
 - (c)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6) 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 6개월의 구금

2) 문서의 취급

(1) 정보위원회는 법 subsection 55R(3)에 따른 통지에 의해 생성된 문서와 관련하여 다음을 행할 수 있다.

(a) 문서의 소유권을 취득

(b) 문서의 사본 제작

(c) 문서의 내용을 요약

(d) 정보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기간 동안 문서의 소지

(2) 정보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정보위원회는 정보위원이 소지하고 않았던 경우 위 문서를 조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에게 위 문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3) 정보위원회는 적절한 시점에 위 문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3) 비공개 문서의 심의

(1)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정보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된다.

(a) 기관의 수석 사무관 혹은 장관이 당해 문서가 비공개 문서라고 주장하는 경우

(b) 법 section 55U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정보위원회는 당해 문서가 비공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문서를 생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정보위원이 당해 문서가 비공개 문서라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위원회는 당해 문서를 생성한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4) 정보위원회는 기관이나 장관이 면제문서의 수정된 사본에 대하여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문서의 생성을 요구할 수 있다.

- (5) 정보위원회에게 비공개 문서가 제공된 때 다음의 자만이 위 문서 또는 그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다.
 - (a) 정보위원
 - (b) 정보위원의 부하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4) 국가 안보, 내각 혹은 의회 예산 사무실 문서의 취급
 - (1) 이 규정은 section 33, 34, 또는 45A에 따라 면제문서에 해당하는 문서에 대한 결정에 관한 정보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된다.
 - (2) 정보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해서만 위와 같은 문서의 생성을 요구할 수 있다.
 - (3) 정보위원이 선서진술서 등에 의한 증거에 의하여 당해 문서가 section 33, 34, 45A에 따른 면제문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위원회는 정보위원의 조사를 위하여 당해 문서의 생성을 요구할 수 있다.
 - (4) 정보위원이 당해 문서가 면제문서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위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위 문서를 생성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a) 정보위원
 - (b) 정보위원의 부하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c) 그에 대한 권한을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자
- 5) 문서를 위한 심층조사
 - (1) 이 규정은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정보위원회 심의에 다음의 경우 적용된다.
 - (a) 법 section 24AA에 따라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기각된 경우
 - (b) 문서에 대한 접근권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여되지 않았던 경우

- (2) 정보위원회는 관련된 기관이나 장관으로 하여금 문서에 관하여 심층검색을 하도록 요구할 있다.

6) 개인에 대한 출석 명령

- (1) 정보위원회는 개인으로 하여금 정보위원회 심의를 위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출석할 것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2) 통지 방법

(a) 문서로써 한다.

(b)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로서 명시된 시점에 통지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적시하여야 한다.

(c) 통지를 준수할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a) 위의 통지에 명시된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b) 그 자의 행동이

(c)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6개월의 구금이다.

7) 선서 혹은 무선서 증언의 집행

- (1) 법 section 55W(1)에 따라 정보위원회가 개인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정보위원회는

(a) 그 개인에 대하여 선서 및 무선서 증언을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b) 선서, 혹은 무선서 증언을 통하여 심문할 수 있다.

- (2) 이 section을 위한 선서 혹은 무선서 증언은 그 개인의 답변이 진실할 것이라는 데 관한 것이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a) 선서 혹은 무선서 증언을 통하여 심문을 해야 할 자로서 또한

(b) 그 자의 행동이

- (c)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4) 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6개월의 구금이다.
- 8) 변호사 특권
- 이 Part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교부되거나, 생성되거나, 언급된 문서 혹은 정보는 계속하여 변호사 특권의 대상이 된다.
- 9) 책임으로부터의 보호
- (1) 이 규정은 개인이 정보위원회 심의를 위한 올바른 신념하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적용된다.
 - (a) 정보를 제공하거나
 - (b) 문서를 생성하거나
 - (c) 질문에 답변하는 경우
 - (2)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a) 위 paragraph(1)(a) 내지 (c)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 (b)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3) 이 규정은 그 자가 위 subsection (1)에 나열된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31. 제 소

- 1) 법률문제에 관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에 대한 제소
- (1) 심의 당사자는 정보위원의 정보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정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오스트레일리아 항소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2) 법원에 대한 제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제기되어야 한다.
 - (a) 다음의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준수하여야 한다.
 - (i) 법 section 55K에 따라 정보위원이 정보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정이 심의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28일이 경과하기 전

- (ii)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이 허용한 추가기간 내
 - (b) 1976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 법률에서 규정된 규정에 따라
 - (3)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제기된 제소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판단할 관할권을 가진다.
 - (4) 법 subsection(3)에 따른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의 관할권은 section 56A에 따라 사실확정의 관할권을 포함한다.
 - (5)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은
 - (a) 반드시 제소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판단하여야 하며
 - (b) 연방법원이 내린 결정의 근거와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6) 법 subsection(5)에 구애받지 않고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정보위원의 결정을 확정하는 명령
 - (b) 정보위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이를 대체하는 명령
 - (c) 다음과 같은 지시에 따라 정보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다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 명령
 - (i) 심리기일의 개최 여부
 - (ii) 추가 증거조사 여부
- 2)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의 사실확정에 관한 권한
- (1) 심의 당사자가 법 section 56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에 제소한 경우 연방법원은 다음의 사실 확정을 할 수 있다.
 - (a) 정보위원이 확정된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 경우(정보위원이 법의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확정된 사실 제외)로서
 - (b) 법원이 판단하기에 다음을 고려했을 때 법원이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
 - (i) 사실이 확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의 정도

- (ii) 사실이 규명될 수 있는 수단
 - (iii) 정보위원회 심의에 관련된 사안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
 - (iv) 정보위원이 사실을 확정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법원의 당사자에 소요되는 비용
 - (v) 정보위원이 사실을 확정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법원의 당사자에 의한 지연
 - (vi) 당사자 일방이 판단하기에 법원이 사실확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vii) 법원이 고려하기에 관련있는 다른 요소들.
- (2) 법 subsection (1)에 따른 사실확정을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a) 정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고려할 수 있다.
 - (b) 추가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다.
- (3) 법 subsection (2)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의 section 56(6)에 따라 정보위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다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하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32. 행정심판소의 심의

- 1) 행정심판소의 심의 대상
- (1) 다음과 같은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a) 법 section 55K에 따라 정보위원에 정보위원회 심의 후 내린 결정
 - (b) 법 paragraph 54W(b)(정보위원회 심의가 부적절한 사안)에 따라 정보위원이 결정을 내린 경우 - 정보위원이 내린 결정과 관련된 정보위원회 심의 대상결정

(2) 1975년 행정심판소 법률 subsection29(2)에도 불구하고, paragraph (1)(d)을 위하여, 위 paragraph(1)(b)에서 언급된 정보위원회 심의 대상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은 다음과 같다.

(a) 법률 paragraph 54W(b)에 따라 정보위원이 결정인 내린 날로부터 기산하여

(b) 위 paragraph54W(b)에 따른 결정에 관하여 section 54X에 따라 통지된 날로부터 28일째 되는 날 종료되는 기간.

2) 행정심판소의 권한

(1) 행정심판소는 기관이나 장관이 청구에 관하여 내린 결정을 심의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기관이나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심판소가 내린 결정은 기관이나 장관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이 법률의 따른 절차과정에서, 당해 문서가 면제문서임이 규명된 경우, 행정심판소는 당해 문서가 비공개 사안을 포함하는 이상 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

(3) 행정심판소의 권한은 이 법률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비용에 관하여 확장된다.

3) 심층 조사의 요구

(1)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 행정심판소에 대한 청구에 따른 심의에 적용된다.

(a) 법 section 24A에 따른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결정의 경우

(b) 청구에 따라 청구에 관련된 모든 문서들에 관하여 접근권을 부여하는 듯한 결정이지만 실제로는 접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 행정심판소는 관련 기관이나 장관으로 하여금 문서의 심층 조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기록 수정의 제한

- (1) 행정심판소는 법 section 57A에 따른 결정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의견의 기록의 수정을 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a) 의견이 사실 착오에 바탕을 둔 것
 - (b) 의견의 기록자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나 자격이 없었던 경우, 혹은 의견 형성의 기초가 된 사실 조사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경우
- (2) 행정심판소는 법 section 57A에 따른 결정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기록의 수정을 요하는 결정을 내리서는 안 된다.
 - (a) 당해 기록이 법률에 따라 법원, 행정심판소, 유권기관 혹은 개인이 내린 결정의 기록인 경우
 - (b) 기록을 수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며, 이는 기관(내부심의), 정보위원, 법원, 혹은 행정심판소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
- (3) 이 규정에서 법률은 노포크 아일랜드 법률을 포함한다.

5) 행정심판소 내 심리절차

- (1) 법 section 33, 34, 45A에 따라 면제문서로 주장되는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소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소는 그 절차와 관련하여 subsection (2)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 (2) 위 subsection(1)에 언급된 절차를 위하여 행정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 (a) 연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판사로서 법무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판사 3인 혹은
 - (b) 한 명의 판사

- (3) 법 subsection(1)에 언급된 절차에 대한 청구에서, 1975년 행정심판소 법률 section 21A는 다음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a) 위 section 21A의 subsection(1)이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 것으로 적용한다.

“(1) 1982년 정보자유법 subsection 58B(2)에 따라 presidential member 한 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소 절차상 심리기일 도중에, 심의 당사자는 행정심판소로 하여금 다시 구성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b) 위 section의 subsection (3)이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 것처럼.

“(3) 심판장은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절차와 관련된 사안이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경우, 당해 절차의 행정심판소의 구성을 3인의 판사로 교체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 6) 특정 비공개 문서에 관한 행정심판소의 심리
 - (1) 법 section 33, 34, 45A에 따라 비공개 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문서에 관한 이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소의 절차에서, 행정심판소는 1975년 행정심판소 법률 section 64, 37에 의해서가 아닌 이 section에 의하여 문서의 생성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
 - (2) 만일 행정심판소가 선서진술서상 증거에 의해서는 당해 문서가 section 33, 34, 45A에 따른 면제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심판소는 조사를 위하여 당해 문서의 생성을 요구할 수 있다.
 - (3) 행정심판소가 당해 문서가 비공개 문서라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심판소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위 문서를 생성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a) 당해 절차를 위해 구성된 행정심판소의 구성원

- (b) 행정심판소의 부하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c) paragraph 60A(6)(a)에서 허용되는 상황 - 관계 보안부서

7) 당사자

- (1) 행정심판소에서의 심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2) 기관을 대변하여 내려진 결정은 기관이 내린 결정으로 간주한다.
- (3)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소 심의절차에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 (a) section 57A에 따라 행정심판소에 심의를 청구한 자
 - (b) 내려진 결정에 관하여 이를 청구한 자
 - (c) 위 청구의 대상이 된 기관의 수석 사무관 혹은 장관
 - (d) 1975년 행정심판소 법률 subsection 30(1A)에 따라 행정심판소에 의해 절차상 당사자로 된 자

8) 영향을 받는 제3자에 대한 통지 요건

- (1) 이 법 section 26A, 26AA, 27, 혹은 27A에 의한 상담절차가 필요한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소에 심의를 청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 (2)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나 장관은 반드시 가능한 빨리 영향을 받는 제3자에 대하여 행정심판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9)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 (1) 이 규정은 section 27 또는 27A에 따른 상담 요건이 적용되는 문서에 관하여 적용된다.
- (2) 기관이나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영향을 받는 제3자에 대하여 subsection 60AA(2)에 따른 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 (a) 기관이나 장관이 정보위원회에 대하여 아래 subsection(3)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제3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 (b) 행정심판소가 위와 같은 명령을 내리는 경우.
- (3) 이 subsection에서 다루는 상황은 영향을 받는 제3자에 대한 통지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 (a) 과세에 관하여 법의 위반(breach of the law)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거나, 특정 사안에 관한 법의 적절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 (b) 특정 사안에 관하여 적절한 법의 집행 혹은 행정을 방해하는 경우
 - (c) 법에 집행에 관한 정보의 비밀 정보원의 존재 혹은 부존재에 관한 사안을 공개하거나 개인으로 하여금 알아내게 할 수 있는 경우
 - (d) 개인의 생활 혹은 신체의 안전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경우
 - (e) 연방정부의 안보, 방위, 혹은 국제관계에 해가 되는 경우
- 10) 안보정보감찰원의 정보 제출 요구
 - (1) 이 규정은 법 section 33에 따라 비공개 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문서에 관련하여 행정심판소에 청구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
 - (2) 해당 문서가 면제문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정보위원회는 안보정보감찰원으로 하여금 직접 출석하여 다음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a) 청구에 따라 문서에 대한 접근권이 부여될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 (i) 연방정부의 안보 혹은
 - (ii) 연방정부의 방위 혹은
 - (iii) 연방정부의 국제 관계 혹은
 - (b) 당해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외국 정부, 외국 정부의 유권기관 혹은 국제기구가 연방정부, 연방정부 기관,

혹은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에 대하여 비밀리에 통신한 정보 혹은 사안이 누설될 경우

- (3) 기관이나 장관이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 행정심판소는 안보정보감찰원으로 하여금 직접 출석하여 다음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a) 제시된 삭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청구에 따라 문서에 대한 접근권이 부여될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 (i) 연방정부의 안보
 - (ii) 연방정부의 방위
 - (iii) 연방정부의 국제 관계
 - (b) 제시된 삭제가 이뤄지지 않은 채 당해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외국 정부, 외국 정부의 유권기관 혹은 국제 기구가 연방정부, 연방정부 기관, 혹은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에 대하여 비밀리에 통신한 정보 혹은 사안이 누설될 경우
- (4) 안보정보감찰원으로부터 증거에 관한 의견을 듣기 전, 행정심판소는 접근권의 청구를 받은 기관이나 장관으로부터 증거를 제출 받아야 한다.
- (5) 안보정보감찰원은 그가 요구받은 증거를 제출하는데 자격이 불충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 subsection (2) 혹은 (3)에 따른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 (6) 안보정보감찰원이 위 subsection (2) 혹은 (3)에 따른 청구를 준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 (a) 행정심판소는 안보정보감찰원으로 하여금 절차를 위하여 정보 위원에게 제출된 문서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본을 만들거나 요약본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 (b) 안보정보감찰원은 청구의 대상이 된 기관이나 장관에 의하여 법 section 33에 따른 면제문서임이 주장되는 문서에 대하여 생성을 요구할 수 있고
 - (c) 안보정보감찰원은 paragraph (b)에서 언급된 문서에 관련된 기관의 문서 혹은 공식문서의 생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 (d) 안보정보감찰원은 paragraph (b) 혹은 (c)에서 언급된 문서의 사본을 만들거나, 요약본을 만들 수 있고 또한
 - (e) 행정심판소에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안보정보감찰원은
 - (i) 정보위원, 기관, 혹은 장관에게 문서의 원본을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 (ii) 그 문서에 관한 사본이나 요약본을 파괴해야 한다.
 - (7) 안보정보감찰원은 반드시 그가 소지하고 않았던 경우 위 paragraph (6)(a) 내지 (d)에서 언급된 문서를 조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에게 위 문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 (8) 행정심판소는 이 규정 아래서 증거를 조사함에 있어 안보정보감찰원이 표시한 의견에 구속받지 않는다.
 - (9) 행정심판소는 안보정보감찰원에게 subsection (2) 내지 (4)에서 언급된 문서로서 다음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a) 안보정보감찰원이 제출하도록 청구받은 증거의 성질
 - (b) 안보정보감찰원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 (10) 개인이 위 subsection (6)에 따라 문서를 생성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와 관련한 변호인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1) 입증책임
- (1) 이 규정에 따라 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혹은 법 section 48에 따른 청구와 관련해서.

- (a) 기관이나 장관이 심의를 청구한 경우 - 기관이나 장관은 결정이 정당하지 않다거나, 혹은 행정심판소가 개인 기록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려야 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혹은
 - (b) 청구인이 심의를 청구한 경우 - 청구의 대상이 된 기관이나 장관은 당해 결정이 정당하다거나, 행정심판소가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려야 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2) 법 section 26A, 26AA, 27, 혹은 27A에 따라 상담절차가 필요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한 이 Part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당해 문서에 관한 영향을 받는 제3자는 당해 절차에서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a)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이 정당하다거나 혹은
 - (b) 행정심판소가 관련 청구를 한 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33. 조사 및 이의신청

1) 조사권한

- (1) 정보위원회는 이의신청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 (2) 정보위원회는 그의 주도하에 기관(피신청 기관)이 이 법률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행한 조치를 조사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 (1) 개인은 기관이 이 법률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동에 관하여 정보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제기의 방법

- (a)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b)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특정하여야 한다.

(3) 오스트레일리아 정보위원 사무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절한 보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a)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및
- (b)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보조를 필요로 하는 자

3)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

- (a) 이의신청에 대한 언급은 그 일부분에 대한 언급과 동일하며
- (b) 행동에 대한 언급은 그 일부분의 대상이 되는 행동에 대한 언급과 동일한 것처럼 적용된다.

4) 예비 심리

- 정보위원은 제기된 항의에 관하여 조사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신청 기관을 심문할 수 있다.

5) 조사하지 않을 재량권

- 정보위원은 다음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법 section 70에 따라 제기된 항의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a) 당해 조치가 행정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b) 다음 각호의 사항

- (i) 이의신청인이 당해 행동에 관하여 피신청 기관, 정보위원, 법원 혹은 행정심판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 (ii) 이의신청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또한

- (iii) 이의신청인이 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던 경우

(c) 다음의 경우

- (i) 이의신청인이 당해 행동에 관하여 다른 단체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 (ii) 이의신청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또한
- (iii) 항의인이 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던 경우

(d) 이의신청인이 피신청기관에 대하여 항의를 제기하였으며 해당 기관이

- (i) 위 항의에 적절하게 대응하였거나 대응하고 있는 경우 혹은
- (ii) 미처 적절하게 대응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

(e) 항의가 경솔하거나, 불명예스럽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논의의 실질이 부족하거나 올바른 신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경우

(f) 항의 제기인이 항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6) 옴부즈만의 조사

(1) 이 규정은 정보위원이 당해 행위에 관한 이의가 다음에 의하여 보다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된다.

- (a) 1976년 옴부즈만 법률에 따른 옴부즈만
- (b) 노포크 아일랜드 법률에 따른 옴부즈만

(2) 정보위원의 의무

- (a) 옴부즈만과 항의제기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안에 관하여 옴부즈만 및 정보위원 양측에 의하여 심문이 진행되는 것을 피하여야 하고 또한
- (b) 당해 행위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조사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 (3) 만일 정보위원이 위 paragraph(2)(b)에 따라 행위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정보위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a) 당해 이의신청을 ombudsman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b) 정보위원의 소지 혹은 관리하에 있는 문서 또는 정보로서 당해 항의제기와 관련된 것을 ombudsman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c)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써 위 이전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4) 법 paragraph (3)(c)에 의한 통지는 정보위원의 결정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 (5) 법 paragraph(1)(a)가 적용되는 경우, 위 subsection(3)에 따라 이전된 항의제기는 1976년 ombudsman 법률에 따라 ombudsman에게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 (6) 법 paragraph(1)(b)가 적용되는 경우, 위 subsection(3)에 따라 이전된 항의제기는 관련 노포크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ombudsman에게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7) 통지 의무

- (1) 조사를 시작하기 전, 정보위원은 피신청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 (2) subsection (3)은 정보위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적용된다.
 - (a) section 70에 따른 항의제기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혹은
 - (b) 정보위원의 주도로 개시된 조사를 계속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 (3) 정보위원은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인 및 피신청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위 결정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4) 위 subsection(3)에 따른 통지는 정보위원의 결정의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8) 정보위원 조사

- (1) 조사는 비공개 및 정보위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2) 조사를 위하여, 정보위원은 기관의 사무관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문을 할 수 있다.

9) 구역에 출입할 일반적인 권한

- (1) 만일 동의인이 법 paragraph(2)(a)에 따른 출입에 동의하는 경우
 - (a) 그 장소에 출입하여 머무를 수 있다.
 - (b) 그 장소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c) 그 장소에 보관된 관련 문서를 조사할 수 있다.
- (2) 허가받은 자는 다음의 장소를 출입할 수 있다.
 - (a) 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곳
 - (b) 연방정부 계약을 위하여 계약된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점유되는 곳
- (3) 허가받은 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 (a) 다음에 해당하는 동의인이 출입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 (i) 기관의 경우 - 기관의 수석 사무관 혹은
 - (ii) 서비스 공급계약자의 경우 - 책임있는 자 및
 - (b) 동의를 하기 전 허가받은 자가 동의인에게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
- (4) 허가받은 자는 동의인이 떠나줄 것을 요청한 경우 반드시 해당 장소를 떠나야 한다.

10) 정보 혹은 문서의 생성의무 부과

- (1) 이 규정은 정보위원이 조사에 관련된 정보나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된다.
- (2) 이 규정은 법 section81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 (3) 정보위원회는 문서에 의한 통지로서, 이 조사를 위하여 개인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a) 정보위원회에게 통지에서 언급된 종류의 정보를 전달할 것
 - (b) 정보위원회에게 통지에서 언급된 종류의 문서를 생성하여 전달할 것
 - (4) 통지 방법
 - (a)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b) 통지를 받은 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할 장소를 적시하여야 한다.
 - (c) 다음 기간 내 혹은 시점에 통지를 준수할 것을 적시하여야 한다.
 - (i)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상의 기간으로 통지에서 명시된 기간 혹은
 - (ii)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상의 시점으로 통지에서 명시된 시점
 - (5)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 (a) 위 subsection(3)의 통지에 명시된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또한
 - (b) 그 자의 행동이
 - (c)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6) 위 위법행위에 대해서 6개월의 구금에 처한다.
- 11) 정보위원 조사 - 문서의 처리
- (1) 정보위원회는 위 법 subsection79(3)에 따른 통지에 의하여 생성된 문서에 관하여 다음 중 하나를 행할 수 있다.
 - (a) 문서의 소유권을 취득
 - (b) 문서의 사본 제작
 - (c) 문서의 내용을 요약
 - (d) 정보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기간동안 문서의 소지
 - (2) 정보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정보위원회는 정보위원이 소지하고 않았던 경우 위 문서를 조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에게 위 문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3) 정보위원회는 적절한 시점에 위 문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12) 비공개 문서

- 법 section 55T 및 55U는 결정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정에 대한 위 section에서의 언급은 section 70에 따른 항의제기에 대한 조사에 대한 언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13) 개인에 대한 출석의무 부과

(1) 정보위원회는 문서에 의한 통지로서 개인에게 조사를 위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통지 방법

(a)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b)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시점으로 통지가 명시하는 시점에 준수할 것을 적시하여야 한다.

(c) 출석하여야 하는 장소를 특정해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a) 위 subsection(1)의 통지에 명시된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또한

(b) 그 자의 행동이

(c)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d) 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6개월의 구금

14) 선서 혹은 무선서 증언의 집행

(1) 법 section 82(1)에 따라 정보위원회가 개인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정보위원회는

(a) 그 개인에 대하여 선서 및 무선서 증언을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b) 선서 혹은 무선서 증언을 통하여 심문할 수 있다.

- (2) 이 규정을 위한 선서 혹은 무선서 증언은 그 개인의 답변이 진실할 것이라는 데 관한 것이다.
- (3)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 (a) 선서 혹은 무선서 증언을 통하여 심문을 해야 할 자로서 또한
 - (b) 그 자의 행동이
 - (c)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4) 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6개월의 구금이다.

15) 면책

- (1) 이 규정은 개인이 조사를 위한 올바른 신념하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적용된다.
 - (a) 정보를 제공하거나
 - (b) 문서를 생성하거나
 - (c) 질문에 답변하는 경우
- (2)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a) 위 paragraph(1)(a) 내지 (c)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민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 (b)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3) 이 section은 그 자가 위 subsection (1)에 나열된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16) 정보위원 조사 - 조사 완료 통지

- (1) 정보위원이 조사를 완료하는 경우, 정보위원은 가능한 빨리, 피신청 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통지는 다음을 적시하여야 한다.
 - (a) 조사 결과
 - (b) 조사 제안
 - (c) 조사 결과 및 제안의 이유
- (3) 피신청 기관은 정보위원에게 통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4) 정보위원회는 통지의 사본을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 (5) 그러나, 통지의 사본이 위 subsection 89C(2)에서 언급된 종류의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정보위원회는 위 사안을 제외한 사본을 준비하여야 한다.

17) 조사 결과

- 조사 결과란 다음과 같다.
- (a) 정보위원회가 조사한 사안
- (b) 위 사안에 관하여 정보위원회가 형성한 의견
- (c) 위 사안에 관하여 정보위원회가 내린 결론
- (d) 피신청 기관의 절차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제안
- (e) 피신청 기관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정보.
- 조사 제안(recommendation)이란 피신청 기관이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보위원회가 생각하는 공식 제안을 의미한다.

18) 조사 제안을 수용하는데 실패한 경우

- (1)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된다.
- (a) 정보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한 경우
- (b) 정보위원회가 기관에 대하여 법 section 86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 (c) 정보위원회가 판단하기에 기관이 조사 제안을 시행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정보위원회는, 문서로써(시행통지), 피신청기관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a)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제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의 상세를 전달하게 하는 것
- (b) 위 상세를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전달하는 것
- (3) 피신청 기관은 반드시 시행 통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34. 옴부즈만에 대한 이의신청

- 1) 옴부즈만에 대한 이의신청
 - 이 법률에 따른 조치에 관한 1976년 옴부즈만 법률 subsection 12(3) 혹은 section 15, 17에 따른 보고는 다음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 (a) 비공개 사안
 - (b) subsection 25(1)에서 언급된 종류의 정보
 - (1)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 적용된다.
 - (a) 옴부즈만이 이 법률에 따라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 (b) 법무장관(Attorney-General)이 1976 옴부즈만 법률 paragraph 9 (3)(a),(c), 혹은 (d)에 따라 조사에 관하여 옴부즈만에게 증서를 발급한 경우
 - (2) 위 증서는 옴부즈만의 다음과 같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a) 이 법률에 따라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이유를 탐문하는 권리
 - (b) 그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질문에 관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할 권리
- 2) 1976년 옴부즈만 법률에 따른 기록의 수정 제한
 - (1) 옴부즈만은 1976년 옴부즈만 법률 section 15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의견의 기록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 (a) 의견이 사실 착오에 바탕을 두었을 때
 - (b) 의견의 기록자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나 자격이 없었던 경우, 혹은 의견 형성의 기초가 된 사실 조사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경우
 - (2) 정보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기록의 수정을 제안하여서는 안 된다.

- (a) 당해 기록이 법률에 따라 법원, 행정심판소, 유권기관 혹은 개인이 내린 결정의 기록인 경우
 - (b) 기록을 수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며, 이는 기관(내부심의), 정보위원, 법원, 혹은 행정심판소 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
- (3) 이 규정에서 법률은 노포크 아일랜드 법률을 포함한다.

35. 권리를 남용하는 정보공개 청구

- 1) 권리를 남용하는 청구라는 선언
 - (1) 정보위원은, 문서로써(권리남용 청구인 선언), 당해 청구인이 권리를 남용하는 청구인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 (2) 정보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선언을 할 수 있다.
 - (a) 기관 혹은 장관의 청구에 따라서
 - (b) 정보위원의 직권으로
 - (3) 기관이나 장관이 선언을 청구한 경우, 기관이나 장관에게 정보위원이 위와같은 선언을 해야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 (4) 정보위원은 가능한 빨리, 위 선언의 대상이 된 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 2) 권리남용 선언의 근거
 - (1) 정보위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권리를 남용하는 청구인임을 선언할 수 있다.
 - (a) 요건
 - (i)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 (ii) 반복되는 청구가 관련 절차의 남용을 포함하며
 - (b) 개인이 참여하는 특정 정보공개절차가 절차 남용을 포함하는 경우
 - (c) 개인이 참여하는 특정 정보공개절차가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 (2) 개인이 다음 중 하나의 행동을 하는 경우 그 개인은 정보공개 절차에 참여한 것에 해당한다.
 - (a) 청구(request)를 하거나
 - (b) section 48에 따라 청구한 경우
 - (c) 내부심의를 청구한 경우
 - (d) 정보위원회 심의를 청구한 경우
 - (3) 정보위원은 위 개인에게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권리를 남용하는 청구인으로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 (4) 이 규정에서 정보공개절차의 절차남용은 다음을 포함하나, 다음에 제한되지 않는다.
 - (a) 개인 혹은 기관의 피고용인을 귀찮게 하거나 위협한 경우
 - (b) 기관의 업무수행에 불합리하게 간섭하는 경우
 - (c) 법원이 부여한 접근권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이용하는 경우
- 3) 권리를 남용하는 청구라는 선언의 효과
- (1) 권리남용 청구인의 선언은 선언문에 적시된 조건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 (2) 법 subsection (1)을 제한함이 없이 권리남용 청구인 선언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a) 기관이나 장관은 권리남용 청구인으로 선언된 개인이 정보위원의 허가 없이 신청한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 (i) 청구
 - (ii) 법 section 48에 따른 청구
 - (iii) 내부심의를 청구

- (b) 정보위원회는 위 개인의 정보위원회 심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 (3) 법 subsection (2)에 언급된 결정이 내려진 경우 기관, 장관 혹은 정보 위원은 가능한 빨리 권리남용 청구인에게 결정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4) 행정심판소에 의한 심의
- 법 section 89K에 따라 정보위원회가 권리남용 청구인 선언에 관하여 내린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 4 장 호주의 정보공개법제의 시사점

제 1 절 호주 정보공개법제의 특징

호주 정보공개법제는 1982년 연방 정보공개법제가 실시된 이후에 지속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건부 비공개 제도가 형성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⁵⁾

호주는 연방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에 관하여 각 기관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정보공개 법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 2 절 호주와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비교

<표> 한국과 호주의 정보공개법제의 비교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호주 정보자유법
공개 청구 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법 제5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인 2) 법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외국인 포함(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개인(every person)은 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정보가 공개대상인 정보인 한 외국인을 별도로 차별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된다.

5) Murray, Simon, Freedom of Information Reform: Does the New Public Interest Test for Conditionally Exempt Documents Signal the Death of the Howard Factors, University of Tasmania Law Review, Vol. 31, Issue 1 (2012), p.59.

제 4 장 호주의 정보공개법제의 시사점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호주 정보자유법
공개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 기관 ④ 각급 학교 ⑤ 지방자치단체 투자 기관 ⑥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⑦ 사회복지법인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법 제3조, 제2조제1호) - 전자문서가 포함되며, 그 밖에도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연방, 주 또는 자치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 규정된 행정기관을 보조하거나 그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입법에 의하여, 혹은 그 입법목적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 사단(위원회, 협의회, 하부-협의회 혹은 다른 단체)은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된 유권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유권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노포크 아일랜드의 유권기관을 보조하거나 그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법인 사단이 위원회, 협의회로 구성되는 기관 • 법원(노포크 아일랜드의 법원은 제외)은 규정된 유권기관으로 간주한다. • 행정적인 사안에 관련하여 특정 행정심판소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 국방 및 안보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 문서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된다.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호주 정보자유법
비공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①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③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사항 ④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⑤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⑥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⑦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⑧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대상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에 관련된 정보 - 사생활의 비밀에 관련된 정보 - 국가안보 혹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내각 문서 - 법의 집행 및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사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법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정보 - 의회 예산사무실 문서 - 문서의 공개가 의회나 법원을 모독하게 되는 경우 - 영업비밀 혹은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 - 선거인 명부 및 관련 문서 • 조건부 비공개 대상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이익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 연방정부 혹은 노포크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적 혹은 재산상 이익 - 기관의 특정업무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 정보 - 사업에 관련된 정보 - 연구에 관련된 정보 - 경제에 관련된 정보

제 4 장 호주의 정보공개법제의 시사점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호주 정보자유법
정보 공개 절차	<p>신청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법 제10조) • 서면의 경우 ①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해야 함 • 구두의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청구는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로서 청구 - 이 법률의 목적에 따른 청구임을 명시 - 기관이나 장관이 특정하기 용이하도록 문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 - 청구인에 대한 통지를 수취할 수단을 명시하여야 한다(전자우편 주소 등) • 정보공개 청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사무직원, 혹은 장관의 보좌관에게 현재 전화번호부 등에서 명시된 중앙 혹은 지역 사무실로 신청 - 기관 주소로 선불 우편신청 - 기관이나 장관이 명시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 발송
	<p>공개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법 제2조제2호) • 사본교부(법 제2조제2호) • 전자적 공개(법 제2조제2호, 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혹은 장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및 사본 교부 -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다. -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주소의 링크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설명한다.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호주 정보자유법
정보 공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공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이나 장관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 - 비공개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절하는 경우 - 문서에 대하여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청구와 관계 없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경우 - 기관이나 장관이 삭제를 통해 수정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수정본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 - 수정된 사본이 청구와 무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 기관이나 장관이 수정된 사본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때 - 수정의 성질 및 정도 - 문서를 수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청구인이 수정된 사본에 대한 접근권을 거부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청구 및 청구인과의 상의에 비추어) - 기관이나 장관의 일부공개 의무 - 수정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 청구인에게 수정된 사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일부공개시의 통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된 사본이라는 사실 - 삭제의 근거 - 삭제된 사안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이유
	부분 공개 가부	

제 4 장 호주의 정보공개법제의 시사점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호주 정보자유법
정보 공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결정시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법제13조제1항) • 비공개결정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13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부의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와 관련하여 문서공개에 대한 거부의사 - 실무상 거부 사유 제시 - 청구인이 일정기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의 사무관이나 장관 사무실의 직원 고지 - 청구인이 상담 직원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고지 - 청구인이 상담직원과 상담할 수 있는 기간(상담 기간)이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 날부터 14일이라는 것 고지 - 청구 수정에 대한 보조 조치 • 청구인이 상담기간 내에 통지에 따라 상담 직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무상 거부사유가 없도록 청구내용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의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법 제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은 법령상 의무가 있거나 허가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대중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나 법인격이 있는 단체 • 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다른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공개함 -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관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함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호주 정보자유법
정보 공개 절차	공개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까지 연장 • 공개결정 간주규정 없음(현행법에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의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이나 장관은 개인에게 접근권이 부여된 날부터 업무일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업무일에는 다음의 요일을 제외한다.(토요일, 일요일) <p>이 section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휴일</p>
정보 공개 절차	비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범위에서 청구인 부담(법 제1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비용의 징수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개인이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지 않음 - 개인에게 접근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함
	불복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내 이의신청(법 제18조제1항).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법 제18조제2항) •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 가능(법 제19조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부의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와 관련하여 문서에 대한 거부 의사 - 실무상 거부 사유 - 청구인이 일정기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의 사무관이나 장관 사무실의 직원 - 청구인이 상담 직원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 - 청구인이 상담직원과 상담할 수 있는 기간(상담 기간)이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 날부터 14일이라는 것 - 청구 수정에 대한 보조 조치 • 청구인이 상담기간 내에 통지에 따라 상담 직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무상 거부사유가 없도록 청구내용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장 호주의 정보공개법제의 시사점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호주 정보자유법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청구된 사실의 통보(법 제 11조제3항), 3일 이내에 공개거부 요청가능(법 제21조제1항) • 공개사실의통지 및 행정쟁송(법 제21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section 26A(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에 따라 주 정부와 상담 (consultation)이 요구되는 경우: 주정부 - 법 section 26AA(노포크 아일랜드의 정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에 따라 연방정부와의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 사업 정보와 관련하여 section 27(사업상 문서)가 적용되는 경우: 관련된 개인 - 살아있는 자에 관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section 27A(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가 적용되는 경우: 당해 개인 - 죽은 자에 관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section 27A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가 적용되는 경우: 죽은 자를 대표하는 자 • 문서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제 3자는 이 part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내부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심의 청구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청구인(내부심의 청구인)에게 내부심의에 관한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혹은 기관이 허용하는 기간 내에 청구한다.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호주 정보자유법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		(b)paragraph53A(b), (c), 혹은 (f)에서 언급된 공개거부 결정의 경우, 다음 기간 중 나중에 경과하는 기간 만료 이전 (i)위 결정이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0일 혹은 기관이 허용하는 더 오랜 기간 (ii)위 paragraph에서 언급된 접근권이 부여된 날부터 15일

제 3 절 우리 정보공개법제에 주는 시사점

- 우리가 판례로 해결하는 사안에 관하여 입법으로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음
-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 부분 공개의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의 해석상 참조할 수 있다.
- 정보 공개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등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기술
- 정보의 비공개에 대해서 청구상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데 행정과 민원인의 적절한 관계형성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판단한다.
- 정보공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오류에 관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정보수정 청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비공개 정보의 범위와 이를 다루는 방법 및 절차를 각 행위 주체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 5 장 결 론

- 이 연구에서는 호주의 정보공개 법제를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파악하였다.
- 국내에 그 내용이 소개되었지만 정보공개법의 상세한 내용은 소개된 적이 없어 호주 정보공개법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호주의 정보공개법제는 우리 법률보다 매우 상세하고 정치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 입법 및 해석에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참 고 문 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사법제도개혁 관련 선진 사법
제도 실태 파악을 위한 호주·뉴질랜드 출장 결과 보고, 2006

주호주대사관 인터넷문서, 호주의 정치구조의 특징과 현황

김정후, 호주(오스트레일리아)법의 전통과 체계, 강원법학 제20권

「구성원들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그 기관들의 공적인 문서에 대한
공적인 접근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An Act to give to
members of the public rights of access to official documents of
the Governments of the Commonwealth and of its agencies)」,
약칭으로는 1982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Murray, Simon, Freedom of Information Reform: Does the New Public
Interest Test for Conditionally Exempt Documents Signal the Death
of the Howard Factors, University of Tasmania Law Review,
Vol. 31, Issue 1 (2012)

부 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공개 청구 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국민(법 제5조 제1항) 1) 자연인 2) 법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외국인 포함 (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 영역에 속한 공문서에 접근할 권리(법 제9조 제1항) → 모든 사람(개인, 법인 포함) • 공적영역에 속하지 않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법 제11조 제1항) → 당사자(즉, 자신의 권리, 이익 또는 의무가 당해 사안과 관련된 신청인, 항고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any person)” (5 U.S.C. § 552 (a)(3)(A)) 1) 자연인 2) 법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외국인 포함 • 수형자 포함 	모든 국민	누구나(법 제1조 제1항) 국민에 한정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인(人) • 모든 인(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개인(every person)은 이 법에 따라 다 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당해 정보가 공개대상 인 정보인 한 외국인을 별도로 차별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시청구권자로 ‘누구든지(何人も)’라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3조). 이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모두 청구권자가 됨.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공개 대상 기관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문서에 포함된 자신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법 제12조) → 모든 개인	•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기관 (5 U.S.C. § 552(f)(1))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관청, 군기관, 정부법인,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법인, 기타 연방정부 행정부의 모든 독립 기관 및 독립 규제위원회 포함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다만 스코틀랜드 지방에 포함된 중앙정부 기구는 2000년 정보자유법 적용대상임. 공공기관의 결정권은 법무장관에게 주어짐.	① 연방의 행정청 이외의 연방기관이나 연방시설 (그들이 공법상의 행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상 법 제1조 제1항)	•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법인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행하는 사법인	•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연방, 주 또는 자치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 규정된 행정기관을 보조하거나 그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입법에 의하여, 혹은 그 입법목적	• 행정기관(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1조 제1항) ① 국가기관 1) 국회와 법원 원이 제외되어 있음. 2) 중앙행정기관(내각부에 설치된 기관, 「내각부 설치법」에 따라 내각부에 설치된 위원회 등의 기관)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3)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p> <p>② 지방자치단체</p> <p>③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p> <p>④ 각급 학교</p> <p>⑤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p> <p>⑥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p> <p>⑦ 사회복지법인</p> <p>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p>	<p>립적인 기관(연금보안센터 및 농업연금연구소의 문서 포함)</p> <p>⑥ 의회의 기관</p> <p>⑦ 스웨덴인들의 자치구인 올란드(Åland)의 행정기관과 올란드 내에 설치된 국가기관</p> <p>⑧ 독립적인 위원회, 협의체, 위원회, 실무단, 조사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지방자치단체 연감 및 명명 또는</p>	<p>연방의회 내지 연방법원은 연방 정보자유법(FOIA)상 공개대상 기관이 아님.</p> <p>• 주(州) 정부 기타 지방 정부는 연방 정보자유법(FOIA)상 공개대상 기관이 아님.</p>				<p>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 사단(위원회, 협의회, 하부-협의회 혹은 다른 단체)은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된 유권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유권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p>	<p>3)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른 기관(경찰청, 검찰청 등)</p> <p>4) 회계감사원</p> <p>5) 공내부 및 그 소속기관</p> <p>② 지방자치단체</p> <p>③ 「독립행정법인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법정법인인 등</p> <p>1) 각종 독립행정법인</p> <p>2) 국립대학법인</p> <p>3)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p> <p>4) 특수법인(일본중앙경매회)</p>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프랑스	호 주	일 본
	기관 또는 단체	<p>①, ②, ⑦ 등에서 정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거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기타의 유사한 기관들이 포함</p> <p>⑨ 법, 명령 등에 의거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법인, 기관, 재단 및 개인(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p> <p>⑩ 북음주의 루터교 (Evangelical Lutheran Church)</p>						5) 허가법인 (일본은행)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공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직무를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법 제3조, 제2조제1호) - 전자문서로서 포함되며, 그 밖에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영역에 속하는 공문서(법 제6조 제1항 각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일지에 대한 기재 또는 유사한 기록 ② ③ 및 ④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보 제공 또는 평을 위한 안내장, 제안서, 탄원서등(부록 포함) ③ 용역 또는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의거한 기타의 계약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U.S.C. § 552(f)(1) 전자적으로 작성, 보유,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공개대상인 연방 행정기관이 정부 기록 내지 문서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5 U.S.C. § 552(f)(1)(A)) 위 정보를 정 보공개대상인 연방 행정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연방 행정기관 아닌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중 정보공개 의무를 면제받는 면제 대상, 완전 면제, 제한적 면제가 있다. 또한 ‘제한적 면제’에는 ‘불이익 심사’와 ‘분류에 의한 면제’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방식을 불문하고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록(법 제2조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포크랜드의 유권기관을 하거나 관련된 기밀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법인 사단이 위원회, 협의회로 구성되는 기관 • 법원(노포크 아일랜드의 법원은 제외)은 규정된 유권기관으로 간주한다. • 행정적인 사안에 관련된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의 직원 직무상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문서, 도면 및 전자 기록(법 제2조 제2항) - 우리 나라 법제가 “매체에 기록된 사항”도 공개대상이므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문서, 전자기록 등의 매체를 공개대상으로 한다.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이 있는 경우, 제공에 부수 및 되는 정보 및 그러한 제공을 고려하기를 위하여 준비된 기타의 의견 및 작성된 문서</p> <p>④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권한의 범위 내의 예산발의의 일관된 전체를 형성하며, 중요한 결정이나 계획에 대한 대안, 이슈,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 및</p>	<p>주체가 당해 연방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정보 역시 포 함됨</p> <p>(5 U.S.C. § 552 (f)(1)(B)).</p>				<p>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및 안보 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통계 기타의 의견 ⑥ 의사록 ⑦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⑧ 당국의 결정, 발표, 법률문서, 계약 및 ①-③ 또는 ⑤-⑦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망록, 의사록 및 기타의 문서들 ⑨ ①-③ 또는 ⑤-⑦에 규정되지 않은 문서 ⑩ 위원회의 보고서, 논문 및 일반인에 대하여 배포할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비공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밀 공문서(법 제24조 제1항 각호) ① 정부 외교통상위원회 의문서, 외무부장관의 정치적 평가, 외국과의 정치적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대상 정보(5 U.S.C. § 552(b)(1)-(9))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 또는 외교정책을 위해 비밀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정보 중 ‘완전면제’ 대상에는 다른 정보를 통해 습득될 수 있는 정보, 대내 첩보국, 해외첩보국, 정부보안사령부 등의 국가 안보 기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공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제3조) 1.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a) 국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b) 연방군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짜, 보존장소, 형식, 매체를 불문하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법인 또는 그러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 문서에는 전자 문서가 포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5조 각호) ① 개인에 관련된 정보로서 해당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그 밖의 개인을 식별할 수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p> <p>③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사항</p> <p>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p> <p>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p>	<p>경제적 협상 관련 문서 및 외부행정 분야의 암호화된 메시지(장관이 달리 결정할 수 있음)</p> <p>② 핀란드와 외국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관한 것 이외의 문서, 국제재판소, 국제조사기구 또는 기타의 국제기관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문서, 외국</p>	<p>지가 특별히 허가되고 대통령령에 의해 실제 적절하게 비밀로 지정된 사항</p> <p>②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 규칙 및 관계에만 관련된 사항</p> <p>③ 법률에 의해 공개가 면제된 사항</p> <p>④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비닉권이 인정되는 정보 또는 비밀에 속하는 상업</p>	<p>보유한 정보, 법정 기록, 의회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 공무원의 효과적 수행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개인 정보, 대외비를 조건으로 제공된 정보,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가 있음.</p> <p>‘제한적 면제’ 대상에서 ‘불이익심사에 의한 면제’ 정보에는 국방, 국내관계, 국가의 경제적 이익, 감사법집행, 감사</p>	<p>군사적 이익과 그밖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c) 내적인 또는 외적인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p> <p>d) 재무, 경쟁, 규제, 담합하는 행태, 정통, 제 및 감독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p>	<p>스를 수행하는 사법인이 생산하고 취득한 정보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특히 소송자료, 보고서, 기록(comptes rendus)연구물, 조서, 통계, 지침, 회람, 공문, 정부문서 및 답변, 교신, 의견, 규정 그리고 결정이 해당된다.</p>		<p>있는 것 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으나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권리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p> <p>② 법인 그 밖의 단체에 관련된 정보 또는 상업에 영위하는 개인의 당해 사업에 관계된 정보로서 아래 각 목에 규정된 것.</p> <p>③ 공개됨으로서 국가안전을 해칠 우려,</p>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계약·기술 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 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⑥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⑧ 공개될 경우	의 당국, 자 연인 또는 법인 과 핀란드 공화국, 시 핀란드 시 민, 핀란드 주민 또는 핀란드에서 영업하는 법 인의 관계에 관한 문서 ③ (i) 범죄수사 를 수행하는 경찰 기타 당국, 검사, 조사와 감독 에 관한 책 임을 지는 당국에 대하 여 작성하는 범죄 보고서. (ii) 범죄수사 또	정보 내지 금융정보에 해당되는 사항 ⑤ 행정기관과 의 소송관 계에 있어 행정 기관 상호간 내지 행정 기관 내부의 각 서 또는 서 신에 해당 되는 사항 ⑥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부당 하고 명백하 게 침해하게 될 인사 내 지 의료에 관한 정보에	기능, 공무의 효과적 보전과 사업상의 이익 이 있고, '분류' 에 의한 정보에는 공표 예정된 정보, 국가안보, 공 공기관에 의한 공 기능, 정보, 정 부 정책 형성, 국왕과의 의사 소통, 환경 정보, 개인정보 가 있음.	e) 재무에 대한 외적 통제와 관련된 사항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는 경우 f) 금지되어 있 는 대외경제 교류에 대한 보호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는 경우 g) 진행중인 재판 절차의 진행, 공정한 절차에 대한 당사 자의 권리 또는 행사 법적 수사, 질서위반법				외국 또는 국제기관 등 의 근로관계 에 손상을 줄 우려 또는 이국 또는 국제기관 등과의 교섭 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행정 기관의 장이 인정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정보 ④ 공개됨으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수사, 공소유지, 형 의 집행 그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는 기소여부 결정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작성된 문서 및 소환장 청서, 소환장 및 피고인의 답변서 ④ 범죄 예방 및 범죄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범죄 수사를 수행하는 경찰 및 기타의 당국이 유지하는 기록물, 범죄예방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 신원 및 여행할 권리	해당되는 사항 ⑦ 사법(司法) 목적으로 작성된 조사기록 내지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i) 소송절차를 저해함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ii) 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iii)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부당하게 침해됨이 합리적으로 예		상의 수사 및 징계법 상의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의 공개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경우 a) 국제적 협상이나 b) 행정기관의 협의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비밀보호에 관한 법규나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의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⑤ 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또는 상호간의 협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로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를 결정하거나 조사하기 위한 행정절차에서 취득된 사건의 기록, 타인의 신분 확인 정보, 어떠한 자에 대하여 발행된 특수한 신분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 또는 여행증서는 경찰, 국경수비대, 세관, 교정당국의 기술적 및 기술적 계획 및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상되는 경우, (iv) 비밀리에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지방정부, 외국의 행정기관, 관공서 또는 민간기관 등의 비밀정보원의 신원이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및 사법당국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기록이거나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국가안전보			하여 규율되는 비밀유지의 의무 대상이 되거나 특별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이 자신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정보의 공개가 경제적 거래 또는 사회보장 또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연방의 재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신뢰에 기초한			시, 공개됨으로써 슬직한 의견교환 또는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 부당하게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⑥ 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는 문서</p> <p>⑥ 접근이 문제 해결을 저해하거나 당사자에 대한 피해 또는 고통을 야기할 절박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고소사건에 관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고소인에 관계되는 문서</p> <p>⑦ 사람, 건물, 시설, 구조물, 데이터 및 통신 시스템의 보안계획의 실현과 관련이 있거나</p>	<p>장에 관한 조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 서 작성한 기록으로서 공개의 경우 비밀정보원에 의해서만 제공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v) 사법(司法)상의 수사 내지 소추의 지침, 기술이나 절차를 공개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공개가 법의 침탈을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p>		<p>행위에 관한 제3자의 이익 이 정보공개청구의 시점에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신뢰에 기초한 정보 연방회의정보부(Bundesnachrichtendienst) 및 그 밖의 연방의 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이 보안감사법(Sicherheitsüberprüfungsgesetz) 제10조 제3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들 기관에 대한 정보</p>			<p>지방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됨으로써 당해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상, 당해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문서의 의존부에 관한 정보(제8조) 개시 청구에 대하여 당해 개시 청구에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그것에 영향을 주는 문서</p> <p>⑧ 사건 및 비상사태, 민사방위 및 사건수사와 관련된 문서</p> <p>⑨ 비밀경찰 및 기타의 당국의 국가안전유지에 관한 문서</p> <p>⑩ 군사기밀, 군대의 물품, 조직, 위치 및 작전, 국가의 무장 방어물 또는 기타의 방어물에 사용된 발명품, 시설, 설비 및 시</p>	<p>예상되는 경우, (vi)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위 각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p> <p>⑧ 금융기관의 규제 또는 감독에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을 대신하거나 이와 같은 행정기관에 제 공하기 위해 작성된 검 사, 운영 또</p>			<p>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p> <p>1.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결정 또는 임박한 행정청의 조치의 결과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법 제4조)</p> <p>2. 개인관련정보 정보(법 제5조)</p> <p>3. 지적 재산권과 영업비밀 및 업무상 비밀 (법 제6조)</p>			<p>관계된 행정 문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답하는 것을 만으로도 불 개시정보를 개시하는 것이 될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문서의 존재를 밝히지 않고 당해 개시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시스템,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타의 사항, 방어진비 접근이 에 관한 문서</p> <p>① 통화정책 또는 외환정책에 있어서의 결정, 조치 또는 준비, 금융정책, 소득정책, 통화정책 또는 외환정책 분야의 결정이나 조치를 위하여 필요 한 금융 또는 소득 정책의 준비 또는 조사에 관한 정보</p>	<p>는 상황 관련 보고에 포함되거나 관련된 사항</p> <p>④ 지질학, 지구 물리학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p>					

부 록

구 분	한 국	핀 란 드	미 국	규 정	해 내	해 외	피 람 시 피	자 여	해
		<p>⑫ 금융시장 및 보험 운영자 및 금융시장과 보험시스템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감독하는 당국의 제정 범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p> <p>⑬ 국민경제에 관한 통계, 금융정책 이니셔티브, 운영계획 및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명백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⑭ 멸종위기의 동물 또는 식물 중, 중요한 자연서식지의 보호에 관한 정보 ⑮ 당국의 조사 또는 기타의 감독 업무에 관한 정보 ⑯ 조사 및 통계를 위한 기본 자료 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의 공기업 또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의 영업 또는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국 경	해 내	포 랑 스	자 여	해 외
		직업적인 비 밀에 관한 정보 ⑱ (i) 국가, 지방 자치단체, 노 동 파트너 또 는 노동쟁의 당사자로서 기타의 공기 업이 수집하 거나 취득한 정보 (ii) 농 업 보조금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국가 의 대리인이 수집하거나 취득한 정보 ⑲ 재판을 준비 할 목적으로 재판에서 소 송당사자의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역할을 하는 당국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 ㉔ 사업 또는 직업적인 비밀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는 문서 및 기타의 유사한 사업에 관한 정보 ㉕ 논문 또는 기타의 과학적 연구, 기술적 또는 기타의 개발 프로젝트 또는 그 평가를 위한 자료에 관한 문서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국 경	해 내	해 외	프랑스	자 여	해 외
		<p>⑳ 입학시험 또는 기타의 시험 또는 시험에 관한 정보</p> <p>㉑ 어떠한 자의 연간수입 또는 순자산에 관한 자료, 보조금 또는 수익의 근거가 되는 수입 및 자산에 관한 자료 또는 그 자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p> <p>㉒ 망명자 또는 망명을 요청하는 자, 거주중인 또는 비자에 관한 문서</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㉔ 복지 수급인 또는 노동 관리의 개별 고객, 수당, 지원조치,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에 부여되는 개별 고객에 대한 노동관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어떠한 자의 건강상태 또는 불리한 조건, 그에게 부여되는 의료 또는 치료에 관한 정보, 그의 성적 행동 및 선호에 관한 정보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영 배	프 랑스	자 여	패
		<p>②6 범죄 용의자, 피해자 또는 형사 문제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자의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범죄 피해자에 관한 정보</p> <p>②7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 신감정, 청소 년 범죄자에 대한 성격검 사 또는 구 금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봉사활동의 실현가능성에 관한</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연구와 관련한 정보 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 재소자 또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적 문서 및 기록 ㉕ 어떠한 자에 대한 심리검사 또는 적성검사 또는 그 결과에 관한 정보,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대 중	배	스	자	패
			<p>징집병의 할 당에 대한 평가, 피고 용인의 선발 또는 급여의 기준 설정에 관한 정보</p> <p>㉔ 학생복지 및 교육면제, 학생과 수험생의 시험결과, 학교 졸업장에 관한 문서,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구두의 평가를 포함 하는 기타의 문서, 입학 자격시험 수험생 내는 학교들 가운</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핀란드 대학입학 자격시험위원회 (Matriculation Examination Board)의 중재 부서</p> <p>㉔ 어떠한 자에 의하여 부여된 비밀 전 화번호에 관한 정보 또는 모바일 통신장치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개인의 주소, 거주지 또는 일시적인 거주지, 전화 번호</p>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해 내	프랑스	자 여	패 영
		기타의 연락 처에 관한 정보 ② 어떠한 자의 정치적 신념 또는 사적으 로 표현된 관 견해에 관 한 정보, 생 활방식, 자발 적 단체에의 참여, 관심, 가족생활 기 타 유사한 개 인적 환경에 관한 정보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신 청 방 법 정 보 공 개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법 제10조) • 서면의 경우 ①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해야 함 • 구두의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을 신청하는 자가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는 경우, 당국의 재량권 행사 또는 결정에 필요한 한,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신청 이유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법 제13조 제1항 3문). • 다만, 기밀문서 등에 대한 접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 정보보호를 위한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기관이 신청방법 및 비용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표(5 U.S.C. § 552(a)(4)(A)(i)) •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식별가능할 정도로 합리적 모사 (“reasonably describe”)하면 충분하며, 기록 내지 문서를 특정하지 않아도 됨(5 U.S.C. § 552(a)(3)(A)(2)(i)) 	<p>서명신청서의 제출에 의한 공개. 정보공개 신청서는 이체일로 대체할 수 있음.</p>	<p>특별한 규정 없음(서면, 구두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최고행정법원과 행정법원의 의견, 제정법원법전 제L.141-10조에 규정된 회계법원 문서, 같은 제정법원법전 제L.241-6조에 규정된 지방회계법원의 문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래위원회가 그의 조사, 심리, 결정의 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호유하는 문서, 공적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대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에 관련된 정보 - 사생활의 비밀에 관련된 정보 - 국가안보 혹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내각 문서 - 법의 집행 및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사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법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정보 - 의회 예산사무실 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법 제4조 제1항) 또는 전자신청 가능(일본 총무성령 제39호 제3조) • 양자 모두 ① 개시청구를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주소 및 법인 기타 단체는 그 대표자의 성명, ② 행정문서의 명칭 기타 개시청구와 관련된 행정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제4조 제1항), ③ 개시 실시

부 록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청구조서를 이 작성하여 이 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 인하여야 함.</p>	<p>등을 설명해 야 함(법 제 13조 제2항).</p>				<p>2013-907 법 물 (이해충돌 방지 등을 규 정한 법률) 제20조가 규 정한 공적생 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청 의 임무수행 범위 내에서 동 위원회가 자신의 조사 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 유되고 있는 문서, 공증보 건법전 제 L.6113-6조에 규정된 보건 기관 인증보 고서 작성 이 전의 문서, 동 법전 제L.1414-</p>	<p>- 문서의 공개 가 의회나 법원을 모독 하게 되는 경우 - 영업비밀 혹 은 상업적으 로 가치 있 는 정보 - 선거인 명부 및 관련 문서</p> <p>• 조건부 비공 개 대상정보</p> <p>- 공공이익을 위하여 공개 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p> <p>- 연방정부 혹 은 노포크 아일랜드 정 부의 재정적 혹은 재산상</p>	<p>방법에 관한 사항(법 제14 조 제2항)</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 - 기관의 특정 업무 -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 - 사업에 관련된 정보 - 연구에 관련된 정보 - 경제에 관련된 정보
에칭					
3조에 규정된 보건기관 종사자의 인증 이 전의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법 제2조제2호) • 사본 교부(법 제2조제2호) • 전자적 공개(법 제2조제2호, 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에게 구두로 내용을 설명하고 검토, 복사 또는 청취되도록 서류를 교부하거나, 사본 또는 출력물을 발행함. 문서의 분량으로 인해 복사가 곤란하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신청된 방식대로 허가해야 함(법 제16조 제1항) • 당국의 결정은 전산화한 공공 정보의 경우는 자기 매체 또는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및 사본 교부 (“public inspection and copying”) (5 U.S.C. § 552(a)(2)) • 공개청구 정보 문서 내지 기록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전자적 방식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가 희망하는 형태와 방법으로 공개 (5 U.S.C. § 552(a)(3)(B)-(C)) • 단, 정보공개 		<p>정보제공(구두, 문서, 전자적 방식. 법 제2조 제2항, 제7조 제3항) 문서의 열람(법 제2조 제2항) 그 밖의 방법 (법 제2조 제2항)</p>	<p>문서(인증평가 과정에서), 2001년 사회보장 제정에 관한 2000년 12월 23일 제 2000-1257호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보건기관들에 대한 감사 보고서, 특정인 을 위하여 시행 된 서비스제공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실제 작성된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청구는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로서 청구 - 이 법률의 목적에 따른 청구임을 명시 - 기관이나 장관이 특정하기 용이하도록 문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 - 청구인에 대한 통지를 수취할 수단을 명시하여야 한다(전자우편 주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사본교부, 전자적 공개(법 제14조 제1항)
	공 개 방 법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자적 형태의 사본을 발부 하여 제공(법 제16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이 허용되는 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접근은 사본 또는 출력물, 전자적 형태의 사본으로 접근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법 제16조 제3항) 	<p>청구에 대해 문서로 답할 의무 또는 정보공개 청구에 답하기 위해 별도의 목록 또는 통계 등 형태의 기록이나 문서를 새로이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청구 방법 - 기관의 사무직원, 혹은 장관에게 현재 관에 계 현재 전화 번호부 등에서 명시된 중앙 혹은 지역 사무실로 신청 - 기관 주소로 선불 우편신청 - 기관이나 장관이 명시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 발송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부 분 공 개 가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의무 -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가능 - 문서의 일부만 기밀인 경우, 기밀인 부분도 공개하지 아니하고도 접근이 가능한 때에는 문서의 공적 부분에 대한 접근이 허용 (법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허용 (5 U.S.C. § 552(a)(1)) -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p>비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누설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정보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 허용 (법 제7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이메일도 가능) - 청구대상 정보를 정확히 적시해야 함.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행정청은 그 일관성 또는 불명확성 때문에 신청된 정보를 가려 낼 수 없는 그런 정보에 답신하여야 할 의무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혹은 장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열람 및 사본 교부 -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다. - 정보를 다른 로드를 할 수 있게 한다. - 정보를 다른 로드를 할 수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주소의 링크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의무 -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제6조 제1항).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결정시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법제13조제1항) • 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제13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거부결정시 ①거부사유, ②자신이 당국에 의하여 결정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③서면 접근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신이 그 당국에 전송된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야 함. ④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통지하여야 함 (법제14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기관이 관련 절차와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표(5 U.S.C. § 552 (a)(4)(A)(i)) •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고, 비공개의 경우 사유와 함께 불복절차를 고지해야 함(5 U.S.C. § 552 (a)(6) (A)(i)) 	요청된 정보를 갖고 있고 그 것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공공기관은 근무일 기준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지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2극적 정보관계에 관하여는 규정없음. 3극적 정보관계에서는 문서로 제3자에게 결정 통지(법제8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의 방식은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다. 즉석에서의 열람, 종이의 복사물 또는 전자적 저장매체 등을 통한 공개 중에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공개가 가능하다 : a) 즉석에서 무료로 열람에 의해 (문서 보존을 위해 그 열람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제외), b) 재생산이 문서보관을 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공개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이나 장관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 - 비공개문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절하는 경우 - 문서에 대하여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청구와 관계 없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경우 - 기관이나 장관이 삭제통해 수정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 및 일부 공개 결정시 일시, 장소, 개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통지(법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 비공개결정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제9조 제2항)
정보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부 록

구 분	한 국	핀 란 드	미 국	영 국	일 본
		<p>피 랑 스</p> <p>지 않는다는 행 조건으로 의해 정청에 의해 저 활용되는 저 동 그 장매체에 또는 그 일한 또는 그 저장</p>			<p>호 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본에 대한 정보공개 의 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된 사본 이 청구와 무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기관이나 장 관이 수정된 사본을 마련 하는 것이 가능할 때 -수정의 성질 및 정도 -문서를 수정 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 -청구인이 수정된 사본에 대한 접근권 을 거부할 것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대한민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청구 및 청구인과의 상의에 비추어) - 기관이나 장관의 일부공개 의무 - 수정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 청구인에게 수정된 사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의무 규정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의 일반적 공표규정 존재 - 국민경제의 발전에 관한 통계자료,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자본 및 금융시장에 대하여 명백하게 영향력을 갖는 기타의 유사한 문서들은 제6조 및 7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후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공표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청구가 20일 이내에 공개하고, 비용의 경우 이와 함께 불복절차를 고지해야 함 (5 U.S.C. § 552(a)(6)(A)(i)) 		관련규정 없음	<p>매체와 양립가능한 저장매체에 복사한 것을 청구인의 비용으로(그 비용은 명령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이러한 재산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 서) 교부하는 것에 의해, c) 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처리가능할 경우에 무료로 전자메일 형태로 이루어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공개시의 통지내용 - 수정된 사실이라는 근거 - 삭제된 사실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 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의무 규정 존재하지 않음. 다만 법 제 24조에서 “정부는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의 총합적인 추진을 위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가 적시에,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명백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을 충
	사 전 공 표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법 제7조 제1항).	이야 함(법 제8조).						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의적, 혼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까지 연장 • 공개결정 없음 (현행법에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 • 신청 문서의 수가 많은 경우, 기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조치 또는 비정상적인 양의 작업을 요하는 문 제에 대한 검토, 결정에 대한 다른 유사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연장 가능(법 제14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기관 이 비용 관련 액수, 납부방법, 면제사유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표 (5 U.S.C. § 552(a)(4)(A)(i))하되, 합리적 범위 내의 비용이어야 함. • 공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상업적 이익 과 무관한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해야 함(5 U.S.C. § 552(a)(4)(A)(iii)) 	<p>신청서가 접수 된 지 20일 이내에 결과통보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p>	<p>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별 제 7서 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에 대한 청구가 본 제 6조의 적용으로 전달가능 하지 않은 기술 (記述 mentions)을 내포하는 문서에 관한 것 이더라도 그 기술부분을 분리하거나 리가 가능할 때에는 이러한 숨김 또는 분리 이후 청구인에게 전달된다(동법 제6조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부의 통지 -청구와 관련 하여 문서공개에 대한 거부 의사 -실무상 거부 사유 제시 - 청구인이 일 정기간 상담 할 수 있는 기관의 사무 관이나 장관 사무실의 직원 고지 - 청구인이 상담 직원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고지 - 청구인이 상담직원과 상담할 수 있는 기간(상담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연장 (법 제10조) • 공개결정 간 주 규정은 없음. 	
공 개 기 한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간)이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것 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수정에 대한 보조 조치 • 청구인이 상담기간 내에 통지에 따라 상담 직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무상 거부사유가 없도록 청구내용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비 용 부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비범위에서 청구인 부담 (법 제1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의 복사, 출력의 형태로의 정보접근, 기술적인 터페이스 또는 전자적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정보에 대한 접근 지원, 당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검색 및 전달에 대하여는 수수료 부과 (법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복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기각결정을 한 책임자의 성명과 직위 고지, 이후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함. 단, 행정기관 		<p>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직무행위 대해 수수료와 경비 징수(법 제10조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공개법 제2조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 받은 유관 행정청은 한 달 내 답신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침묵은 묵시적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정보 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의료 정보의 경우 5년 미만된 정보인 경우에는 8일이고 5년 이상 된 정보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은 법령 상 의무가 있거나 허가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 대상자 일반 대중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나 범인격이 있는 단체 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비범위에서 청구인 부담 (법 제16조제1항)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이 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적 구제절차에 따른 불복신청 없이 사법적 구제절차 이용 가능(U.S.C. §552(a)(6)(C)(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적 구제절차 (5 U.S.C. §552(a)(4)(B)) 			는 1개월이기는 한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공개함 -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관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함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불복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내 이의신청(법 제 18조제1항).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법 제18조제 2항) •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가 능(법 제19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소송절차법에 의한 상소(법 제33조) 		<p>신청된 정보의 공개가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음. 최초 의 이의신청은 해당기관에게 접수시키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반드시 그에 대한 ‘내부심사’(internal review)를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이 언제 될 것 인지 신청자에게 통고해 주어야 함. 내부심사는 공개</p>	<p>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무이행소송제기 가능(법 제9조 제4항) *정보공개관련 쟁송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행정법원법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의 목적 또는 목적 결정 동의 목적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법(私法)의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서비스관리 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으로 내려진 모든 개인적 결정은 이러한 결정이 그에게 사전에 통지되었을 때만 대항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공개의 기한 - 기관이나 장 관은 개인에게 접근권이 부여된 날부터 업무일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 여야 한다. - 업무일 에는 다음의 요일을 제외한다. 토요일, 일요일이 section 에 따른 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일 이내 불복신청(법 제 18조, 행정불복심사법 제 45조). 2주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법 제 21조, 제13조 제3항) • 행정사건소송법 제12조 제 4항에 의하여 불복신청에 대하여 행정소송가능(법 제21조).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거부 결정을 내린 당사자 이외의 직원으로 상급직원에게 말긴다. 내부심사는 보통 2~3주 안에 마무리되지만 복잡한 경우, 특히 공익성심사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최대 6주까지 소요될 수 있음.</p> <p>내부심사를 통헤서도 애초의 공개 거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청자는 이를 정보관에게 항소할 수 있음.</p>					

구	판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에	북	에	프랑스	자	여	페	에	
							<p>신청자든 정 고기관이든 정 보판무관이 내 린 결정에 대 해 동의할 수 없다면, 3차 이 의신청을 통해 상고할 수 있 음. 정보공개심 관소에서 이 3 차 이의신청을 다룸. 정보공개 심판소의 결정 은 최종심급의 판단으로 사법 적 구속력을 가짐.</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청구된 사실의 통보 (법 제11조제3항), 3일 이내에 공개 거부 요청가능 (법 제21조제1항) • 공개사실의 통지 및 행정쟁송(법 제21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공개 또는 기밀제한의 해체에 있어 관련 정보의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함(법 제16조 제3항, 제26조 제1항 2호,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2호). 			<p>정보 공개를 배제할 보호가 치있는 이익을 갖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부여 (법 제8조 제1항)</p> <p>공개결정의 통지, 결정이 존속력을 발한 때로부터 2주일 이후에야 정보 공개 가능 (법 제8지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비용의 징수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지 않음 - 개인에게 접근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청구된 사실의 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법 제13조), 2주일 이내에 공개 거부 요청가능(법 제13조제3항) • 불복신청(법 제20조) 및 행정소송(법 제21조)